선	기관의 장
2	
람	

all ways INCHEON

제2015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규	칙															
○ 인천공	'역시 규	칙 제32	243호	인천공	'역시	행정기 [.]	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딕 일부	개정규	·칙 ····	•••••	•••••	•••••	. 3
○ 인천공	'역시 규	칙 제32	244호	인천공	'역시	공무원	정원 ·	규칙 일	실부개정규	구칙 ·····	•••••	••••••	••••••	•••••	•••••	. 8
	11	7														
고	시															
○ 인천공	'역시고	시 제20	022-49	호 도	시공원	시설(징	두못·장	상제공	공원 주차	장) 사	용료 :	고시 …	••••••	•••••	•••••	· 25
○ 인천공	·역시고	시 제2(022-52	호도	시관리	계획 결	결정(변경	경) 및	실시계획	인가(팀	변경) 그	□시 …	•••••	•••••	•••••	· 26
○ 인천공	'역시고	시 제20	022-53	3호 도·	시관리	계획 결	결정(변경	경) 및	실시계획	인가 :	고시 …	•••••	•••••	•••••	•••••	· 30
○ 인천공	:역시고	시 제2(022-54	1호 도	시계획	시설(체	육시설) 실시	계획 고/	٠٠٠٠٠٠	•••••	•••••	•••••	•••••	•••••	• 34
()									역 송도=				<u>단</u> 지 설	실시계	획(변경	(36
													•••••	••••••	•••••	••
○ 인천공 	·역시경	제자유-	구역정	고시 기	¶2022	-10호 -	주택건 [.]	설사업	계획변경	승인 그	고시 …	••••••	••••••	•••••	••••••	• 53
공	고															
○ 인천공	'역시 공	고 제20	022-52	20호 5	시계회	텍시설(년	도로: 중	동로1-2	호선)사입	실시	계획인	!가 공	·고·열	람	•••••	. 54
○ 인천공	'역시 공	고 제20	022-52	22호 5	시관리	믜계획(<u>└</u>	도시계	획시설:	공원) 결	설정(안)	공고	열람·	•••••	•••••	•••••	· 63
○ 인천공	'역시공	고 제2	022-5	28호 .	도시계	획시설(문화시	설)사인	설 실시계	획 및	사업	인정어	관현	한 주	민 등의	일 65
l .									•••••		•••••	••••••	•••••	•••••	•••••	•
									시계획 공							
									시의결							
									」공고·열립							
									ト진반납)							
l									공고 ········ 당저 오 기							
) 공시(6 -) 공시(···········		-20 - 2	οπ៕	<u>ч</u> т.	단점유 기		12 0				H 6 /	" 77
Ι, ,	,	_		고 제2	2022-4	5호 부 ³	정당업	자 처.	분사전통지	[(청문	실시 등	통지)	공시성	농달 공	공고	· 78
○ 인천공	'역시 종	합건설	본부공	고 제	2022-7	'2호 미	 전지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환지처	분공	고	나실 성	등 통기	۲ 83
̄공시송	달 추기	ㅏ 공고	••••••	••••••	•••••	•••••	••••••	•••••	•••••	••••••	•••••	•••••	•••••	•••••	•••••	
						<u> </u>			 1							
회											OI	大-		ro	1 E	ΛĪ.
2 L											~ '	1	7	3 =		И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22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86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2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14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24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77

규 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43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대기보전과, 에너지정책과,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을 "대기보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환경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장,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장"을 "생활환경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자원순환에너지본부) ① 자원순환정책과, 자원순환시설과, 매립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를 둔다.
 - ②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자원순환정책과장, 자원순환시설과장, 매립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 2. 청소 행정 개선 ·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쓰레기 종량제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 4. 폐기물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 5.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규제에 관한 사항
- 6.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7. 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8.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관한 사항
- 9.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10. 재활용센터에 관한 사항
- 11. 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12. 사업장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13. 건설폐기물관리 및 순환골재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 14. 자원순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④ 자원순환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 4.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5.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자원재생센터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7. 자치구 · 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및 관리 · 감독에 관한 사항
- 8.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매립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행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기반 마련 추진에 관한 사항
- 2. 대체매립지 또는 자체매립지 조성에 관한 사항
- 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 4. 수도권매립지 부지이용 등 협의에 관한 사항
- 5.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관련 중앙ㆍ타 지자체간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유관단체와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 7. 자체매립지 외 부지 및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8. 자체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 9. 기타 매립지 정책수립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⑥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에너지사업기금 운영
- 2.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
-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 4. 스마트그리드 관련 업무
- 5. 도시가스 관련 업무
- 6. 청정개발체제(CDM) 및 온실가스 감축 등록 관련 업무
- 7. 전기사업 및 안전관리 대행업, 전원개발 사업 관리업무
- 8. 전기공사업, 설계업 및 감리업 관리업무
- 9. 전기차, 수소연료 자동차 등 그린카 보급 및 지원업무

2022. 2. 28.(월요일)

- 10. 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1.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2. 에너지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관한 사항
- 13. 친환경 에너지 건축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 14. 에너지 절약 교육 ·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15. 산업자원(에너지 분야)동원에 관한 사항
- 16.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업무
- 17. 천연가스, LNG자동차 보급 및 지원 업무
- 18.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업무
- 19. 석유 및 석탄 관련 업무
- 20. 그린마을 만들기 사업
- 21. 채광계획 인가 및 광산에 관한 업무
- 22. 친환경 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한시기구 신설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분장사무와 기구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시기구로 이관되는 부서 조항 일부 삭제(제12조제1항)
- 나. 한시기구로 이관되는 직위 조항 일부 삭제(제12조제6항부터 제8항)
- 다. 한시기구의 조직, 직위, 분장사무 조항 신설(제12조의2 신설)

인천광역시 공무워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규칙 제3244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총계	7,381	2,438	118	3,249	294	1,258	24
정무직 소계	3	1					2
정무	3	1					2
시장	1	1					
위원장	1						1
상임위원	1						1
일반직 소계	3,843	2,123	111	90	294	1,203	22
1급	1				1		
관리관	1				1		
2급	1				1		
이사관	1				1		
2-3급	3	2	1				
이사관·부이사관	3	2	1				
3급	<i>20</i>	<i>12</i>		1	4	3	
부이사관	<i>20</i>	<i>12</i>		1	4	3	
3-4급	2	2					
부이사관·서기관	2	2					
4급	<i>158</i>	97	3	4	16	37	1
서기관	68	44	3	2	7	11	1
기술서기관	29	13			6	10	
서기관·기술서기관	<i>58</i>	<i>40</i>		1	3	14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1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	1					1	
5급	630	402	19	10	65	130	4
행정	293	198	15	6	31	39	4
사회복지	2	2					
사서	1					1	
공업 ⁶ 법	36	10			4	22	
농업	4	4					
녹지	15	6			2	7	
해양수산	4	4					
보건	5	4			1		
간호	1	1					
환경	9	8			1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경제자유	사업소	합의제
직급별	0 / 11	L 0	사무처	17/16	구역청	7104	행정기관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공업·보건·식품위생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행정(임시정원)	1	1					
보건·간호(임시정원)	1	1					
의무(임시정원)	1	1					
행정·보건(임시정원)	1	1					
6급	1,374	879	51	18	109	308	9
행정	526	372	37	8	38	63	8
세무	32	30			1	1	
전산	62	47	2	2	4	6	1
사회복지	12	12					
사서	7	1				6	
공업	114	42			8	64	
농업	15	11				4	
녹지	25	12			4	9	
수의	6	3		3			
해양수산	18	18					
보건	20	18			2		
간호	6	6					
환경	30	25	1		4		
시설	249	157	3		36	53	
방송통신	25	14			5	6	
행정·세무	4	4					
행정·전산	4	4					
행정·사회복지	16	14	1			1	
행정·사서	4	2				2	
행정·공업	5	3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2					

기관별			의 회		경제자유		합 의 제
직급별	총계	본청	사무처	직속기관	구역청	사업소	행정기관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6	5			1		
행정·시설	20	18			2		
행정·학예연구	1					1	
전산·방송통신	3	3					
공업·시설	19	2	1			16	
녹지·환경	3	3					
녹지·시설	1					1	
녹지·녹지연구	2					2	
수의·수의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2	2					
해양수산·어촌지도	6	1				5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2					2	
보건·간호	4	4					
보건·환경	2	2					
보건·보건연구	1	1					
환경·시설	2	2					
시설·방재안전	2	2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운전	15	5	2	1	3	4	
간호조무	1			1			
위생	2	1		1			
속기	1		1				
방호	4	3	1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3	1	1			1	
전기운영	15	1				14	
기계운영	35	1				34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17	7	1	1		8	
행정(임시정원)	1	1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의제
직급별			사무처	, , , ,	구역정		행정기관
보건(임시정원)	2	2					
간호(임시정원)	1	1					
보건·간호(임시정원)	3	3					
의료기술·약무(임시정원)		1					
보건·의료기술·간호(임시정원)	1	1					
7급	1,333	664	31	44	86	502	6
행정	437	277	21	12	27	96	4
세무	11	10				1	
전산	39	25		2		12	
사회복지	18	15				3	
사서	13	2	1			10	
공업	168	32		6	4	126	
농업	14	5				9	
녹지	31	12			4	15	
수의	3	1		2			
해양수산	9	9					
보건	13	9		2	2		
간호	4	4					
환경	24	17			3	4	
시설	223	113	1	2	32	75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25	13	1	1	4	6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7	5	1			1	
행정·사회복지	10	8				2	
행정·사서	4					4	
행정·공업	3	1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3	2	1				
행정·시설	24	18			6		
행정·방재안전	3	3					
행정·방송통신	2	1			1		
세무·전산	1	1					
전산·방송통신	4	4					
공업·환경	5	5					
공업·시설	23	4				19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공업·방송통신	1				, , ,	1	
농업·수의	2	1		1			
녹지·환경	1					1	
녹지·시설	3	2				1	
수의·수의연구	7	2		4		1	
해양수산·환경	2	2					
해양수산·시설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3					3	
보건·간호	3	3					
보건·환경	1	1					
환경·시설	1	1					
시설·방송통신	1					1	
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약무	1	1					
간호·건축	1	1					
행정·시설·방재안전	4	4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운전	34	11	2	7		13	1
위생	1					1	
속기	2		2				
방호	4			1		3	
전기운영	24	2		1		21	
기계운영	43	1				42	
열관리운영	1			1			
화공운영	5					5	
보건운영	1			1			
사무운영	47	19		1	2	24	1
행정(임시정원)	3	3					
전산(임시정원)	1	1					
세무(임시정원)	1	1					
보건(임시정원)	3	3					
간호(임시정원)	1	1					
공업·보건·환경(임시정원)	1	1					
8급	287	61	5	13	12	196	
행정	77	17	1	3	8	48	
세무	2	2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전산	1	1					
사회복지	2	2					
사서	5					5	
공업	76	2		1	3	70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보건	5	4		1			
간호	1	1					
환경	5	5					
시설	48	15			1	32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행정·사서	5					5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공업·시설	1					1	
녹지·시설	1	1					
녹지·녹지연구	1					1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운전	8			6		2	
위생	1			1			
속기	4		4				
시설관리	26					26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4			1		3	
9급	27	2				23	2
행정	4	2					2
사서	1					1	
공업	1					1	
시설	2					2	
시설관리	19					19	
전문경력관 소계	7	2	1			4	
나군	6	1	1			4	
사진기사	1		1				

기관별	호 레	н ы	의 회	기소키키	경제자유	ગ બ ઢ	합 의 제
직급별	총계	본 청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행정기관
나병관리사	1	1					
무대장치사	2					2	
음향기사	1					1	
조명기사	1					1	
다군	1	1					
사진기사	1	1					
특정직 소계	3,291	294		2,997			
소방직	3,291	294		2,997			
소방정	20	10		10			
소방령	97	34		63			
소방경	246	43		203			
소방위	351	60		291			
소방장	455	67		388			
소방교	808	54		754			
소방사	1,314	26		1,288			
별정직 소계	18	11	7				
1급	1	1					
관리관·별정	1	1					
4급	8	2	6				
별정	2	2					
서기관·별정	5		5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	1		1				
5급	3	3					
비서관	2	2					
국제관계대사	1	1					
6급	3	3					
비서	3	3					
7급	3	2	1				
비서	3	2	1				
연구직 소계	197	9		134		54	
연구관	33			25		8	
수의연구	2			2			
해양수산연구	1					1	
보건연구	10			10			
환경연구	11			11			
학예연구	3					3	

기관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경제자유	사업소	합의제
직급별 고 어어구 . 한 건 어그	1		사무처		구역청	1	행정기관
공업연구·환경연구	4			1		3	
보건연구·환경연구 보건·환경·수의연구	1			1		ა	
	164	9				46	
연구사	2	2		109		40	
기록연구		Δ				1	
녹지연구	1					1	
수의연구	9			9			
해양수산연구	7					7	
보건연구	48			42		6	
공업연구	2					2	
환경연구	61			52		9	
학예연구	23	6				17	
공업연구·환경연구	3					3	
농업연구·수의연구	2			2			
보건연구·환경연구	4			4			
학예연구·편사연구	1	1					
해양수산연구·어촌지도	1					1	
지도직 소계	29			28		1	
지도관	5			5			
농촌지도	5			5			
지도사	24			23		1	
농촌지도	23			23			
어촌지도	1					1	
기능직 소계							
9급							

[별표 2] 시본청에 두는 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대 변 인	계		22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3
		6급	5	행정5
		7급	12	행정9, 공업1, 전기운영1, 기계운영1
전	·문경력:	다군	1	사진기사1
시민정책	계		18	
담 당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 4
		6급	8	행정6, 시설1, 행정·시설1
		7급	5	행정4, 사무운영1
협치인권	계		19	
담 당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 4
		6급	6	행정6
		7급	8	행정7, 행정·시설1
소통기획	계		19	
담 당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4
		6급	6	행정5, 사무운영1
		7급	8	행정7, 전산1
남북교류협력	계		11	
담 당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3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4	행정3, 행정·시설1
노동정책	계		13	
담 당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3
		6급	5	행정 5
		7급	3	행정3
		8급	1	행정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감 사 관	계		51	
	일반직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5급	8	행정6, 시설1, 행정·시설1
		6급	35	행정21, 세무1, 전산1, 공업1, 녹지1,
				환경1, 시설7, 행정·사회복지1,
				보건·보건연구1
		7급	7	행정6, 행정·사회복지1
기획조정실	계		362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4급	13	서기관8,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58	행정49, 시설2, 방송통신2, 행정·시설2, 행정·방송통신2, 행정·운전1
		6급	172	행정83, 세무28, 전산28, 시설11,
				방송통신4, 행정·세무4, 행정·전산3, 행정·시설4, 운전5, 통신운영1, 사무운영1
		7급	113	행정52, 세무10, 전산17, 시설5,
				방송통신5, 행정·세무2, 행정·전산3,
				행정·보건1, 행정·시설1, 세무·전산1,
				전산·방송통신1, 운전11, 사무운영4
		8급	3	행정1, 세무2
	별정직	5급	1	국제관계대사1
시민안전본부	계		119	
	일반직	2-3급	1	이사관·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21	행정10, 공업1, 시설1, 방송통신1,
				행정·시설2, 행정·방재안전2, 보건·환경1,
				행정·공업·시설1, 행정·시설·방재안전1, 행정·보건(임시정원)1
		a =	4.0	
		6급	48	행정13, 전산5, 공업3, 농업2, 수의1,
				해양수산2, 보건2, 환경3, 시설3,
				방송통신5, 행정·전산1, 행정·공업1, 행정·환경1, 행정·시설1, 전산·방송통신1,
				영영·천정1, 영영·시宣1, 전권·영흥·정1, 공업·시설1, 시설·방재안전2,
				6 급 시 글 1, 시 글 - 8 세 근 전 2, 행정 (임시정원)1
			41	
		7급	41	행정10, 전산1, 공업1, 보건1, 시설7, 방재안전2, 방송통신3, 행정·방재안전3,
				[정세년선2, 중중중선3, 왕경 중세년선3, [전산·방송통신2, 공업·환경1,
				시설·방재안전1, 보건·약무1,
				하정·시설·방재안전4, 행정(임시정원)2,
				전산(임시정원)1,
				공업·보건·환경(임시정원)1
		8급	2	방재안전1, 방송통신1
		0 日	7	[경세단선1, 방충충선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Ì	일자리경제	계		171	
	본부	일반직	2-3급	1	이사관·부이사관1
			4급	8	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37	행정22, 공업4, 농업4, 행정·공업2, 행정·농업1, 공업·시설1, 농업·수의2, 수의·수의연구1
			6급	72	행정39, 전산4, 공업12, 농업9, 수의2, 시설4, 행정·농업1, 행정·시설1
			7급	50	행정30, 공업6, 농업5, 수의1, 시설2, 행정·시설2, 공업·시설1, 농업·수의1, 수의·수의연구2
			8급	3	행정2, 농업1
	복지국	계		86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5	서기관5
			5급	17	행정11, 행정·사회복지6
			6급	37	행정21, 사회복지7, 시설1, 행정·사회복지8
			7급	23	행정10, 사회복지7, 시설2, 행정·사회복지4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여성가족국	계		9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5	서기관5
			5급	19	행정1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3, 보건·간호1
			6급	37	행정23, 사회복지5, 시설1, 행정·사회복지4, 행정·보건1, 행정·간호1, 보건·간호1, 행정·보건·간호1
			7급	27	행정13, 사회복지7, 보건2, 행정·전산1, 행정·사회복지3, 행정·시설1
			8급	2	사회복지1, 행정·보건1

ſ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건강체육국	계		123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5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25	행정4, 보건4, 간호1, 시설1, 행정·보건2, 보건·간호5, 행정·보건·간호1, 공업·보건·식품위생1, 행정·보건·약무·간호1,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1, 보건·의무·약무·간호1, 행정(임시정원)1, 보건·간호(임시정원)1, 의무(임시정원)1
			6급	48	행정9, 보건15, 간호5, 시설2, 행정·보건1, 행정·시설2, 보건·간호3, 보건·의료기술·간호1, 보건·약무·간호1, 보건·의무·약무·간호1, 보건(임시정원)2, 간호(임시정원)1, 보건·간호(임시정원)3, 의료기술·약무(임시정원)1, 보건·의료기술·간호(임시정원)1
			7급	36	행정14, 보건6, 간호3, 시설1, 행정·보건1, 보건·간호3, 간호·건축1, 보건·의료기술·간호1, 행정(임시정원)1, 세무(임시정원)1, 보건(임시정원)3, 간호(임시정원)1
			8급	7	보건4, 간호1, 보건·간호2
	<u>~</u>	문경력:	나군	1	나병관리사1
	문화관광국	계		118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5,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4	행정18, 시설1, 행정·사서1, 행정·보건1, 행정·시설2, 행정·학예연구1
			6급	44	행정30, 공업1, 녹지1, 보건1, 시설7, 행정·사서2, 행정·시설1, 사무운영1
			7급	36	행정26, 전산1, 사서2, 공업1, 시설4, 행정·시설2
		연구직	연구사	7	학예연구6, 학예연구·편사연구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환경국	계		125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i>5</i>	기술서기관2, <i>서기관·기술서기관3</i>
		5급	21	<i>행정1</i> , 환경8, 시설2, <i>행정·환경2</i> , 행정·시설1, 공업·환경2, <i>환경·시설1</i> , 행정·공업·환경2, 행정·녹지·환경1, 공업·보건·환경1
		6급	44	<i>행정8</i> , 전산1, <i>공업6</i> , <i>환경16</i> , <i>시설5</i> , 행정·공업1, <i>행정·환경1</i> , 녹지·환경1, <i>보건·환경1</i> , <i>환정·시설1</i> , 공업·보건·환경2, 기계운영1
		7급	43	<i>행정9, 공업6</i> , <i>환경15</i> , 시설5, 공업·환경3, 보건·환경1, 사무운영4
		8급	11	행정2, 공업1, 환경5, 시설1, 행정·환경1, 보건·환경1
<i>자원순환</i>	계		64	
에너지본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15	행정3, 공업4, 행정·공업2, 행정·환경3, 환경·시설1, 행정·환경·시설1, 공업·환경·시설1
		6급	29	행정7, 공업10, 환경4, 시설3, 행정·환경3, 보건·환경1, 환경·시설1
		7급	<i>15</i>	행정4, 공업9, 환경2
교통건설국	계		189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8	서기관3,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3
		5급	34	행정14, 공업1, 시설12, 방송통신2, 행정·시설3, 공업·시설1, 행정·공업·방송통신1
		6급	82	행정33, 세무1, 전산3, 공업5, 시설26, 방송통신4, 행정·공업1, 행정·시설4, 전산·방송통신2, 공업·시설1, 행정·전산·시설1, 전기운영1
		7급	60	행정19, 전산1, 공업5, 시설21, 방송통신5, 행정·시설1, 공업·시설2, 전기운영1, 사무운영5
		8급	4	행정3, 시설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행정국	계		152	
	정무직	정무	1	시장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서기관5,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23	행정20, 행정·시설2, 공업·시설1
		6급	55	행정36, 전산2, 사서1, 공업1, 간호1, 시설5, 방송통신1, 행정·사회복지1, 위생1, 방호3, 사무운영3
		7급	44	행정29, 전산3, 공업2, 간호1, 시설1, 행정·전산1, 행정·공업1, 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1, 사무운영4
		8급	7	행정5, 전산1, 공업1
		9급	2	행정2
	별정직	1급	1	관리관·별정1
		4급	2	별정2
		5급	2	비서관2
		6급	3	비서3
		7급	2	비서2
	연구직	연구사	2	기록연구2
도시재생	계		120	
녹지국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기술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25	행정1, 녹지6, 시설15, 행정·시설1, 공업·시설1, 녹지·시설1
		6급	39	행정2, 전산1, 공업1, 녹지9, 시설25, 사무운영1
		7급	44	행정5, 녹지12, 시설24, 공업·시설1, 녹지·시설1, 사무운영1
		8급	5	시설4, 녹지·시설1
도시계획국	계		166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36	시설29, 행정·시설7
		6급	60	행정5, 전산1, 공업1, 녹지1, 시설48, 행정·시설3, 녹지·환경1
		7급	53	행정7, 전산1, 사회복지1, 공업1, 시설35, 행정·시설5, 공업·환경1, 녹지·시설1, 환경·시설1
		8급	9	시설9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해양항공국	계		103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1,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18 행정 5, 해양수산 4, 시설 3, 행정 · 녹지·환경 1, 행정·해양수산·환경							
		6급	43	행정13, 공업1, 해양수산16, 환경1, 시설8 녹지·환경1, 해양수산·환경2, 해양수산·어촌지도1			
		7급	31	행정10, 해양수산9, 시설6, 행정·시설3, 해양수산·환경2, 해양수산·시설1			
		8급	4	행정1, 해양수산3			
소방본부	계		296				
	일반직	6급	1	전산1			
		7급	1	전산·방송통신1			
	특정직		294	소방정10, 소방령34, 소방경43, 소방위60, 소방장67, 소방교54, 소방사26			

◇개정이유

새로운 자원순환체계 도입과 에너지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 국 및 자원순환에너지본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설치에 따른 정원 3명 증원(별표 1)

- 총 정원 : 7,378명 → 7,381명(3명 증)

· 일반직 3급 정원 : 19명 → 20명(1명 증)

· 일반직 4급 정원 : 157명 → 158명(1명 증)

· 일반직 7급 정원 : 1,332명 → 1,333명(1명 증)

나. 환경국 및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정원 조정(별표 2)

- 환경국 : 186명 → 125명(61명 감)

자원순환에너지본부 : 0명 → 64명(64명 증)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9호

도시공원시설(장두못·장성제공원 주차장) 사용료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5조(사용료 등)에 따라 도시공원 시설(장두못·장성제공원 주차장)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2. 2.28. 인 천 광 역 시 장

- 1. 대 상: 장두못공원 주차장, 장성제공원 주차장
- 2. 공원시설(주차장) 사용료

	기 준	사용료	비고
	최초 1시간 까지	무료	
1회 주차	1시간 이후 30분까지	400원	
	1시간 30분 이후 15분당	200원	
	전일주차(5시간이상)	4,000원	

3. 주차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및 면제 차량

가. 감면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적용 나. 면제대상

대	상	내 용	비고
상시	출입차량	• 소속 업무담당공무원·공무직·기간제근로자, 위탁관리기관 직원 차량	
공	무 차 량	•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내방차량	
납	품 차 량	• 계양구 및 위탁관리기관에 물품 등을 납품하는 차량	
공 /	사 차 량	• 공원에서 공사용역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4. 기타사항: 고시 후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52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944호선 외 2건, 광장: 101호 외 1건)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2), 계양구청(도시재생과, ☎032-450-563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2.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 O 위 치(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산 95번지 일원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	944	17.5	보조 간선 도로	3,202	광장 101호 (선주지동 227-2)	검단신도시 구역계 (갈현동 산95)	일반 도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81호 ('20.03.16)	
변경	중로	2	944	17.5~ 70.7	보조 간선 도로	3,202	광장 101호 (선주지동 227-8)	검단신도시 구역계 (갈현동 산95)	일반 도로			분할측량성과 반영 및 면적변경
기정	중로	2	135	15~ 25.2	국지 도로	2,600	중로1-141	이화동 구역계	일반 도로		인천직할시 고시 제90-90호 ('90. 7. 27.)	
변경	중로	2	135	15~ 25.2	국지 도로	2,600	중로1-141	이화동 구역계	일반 도로			분할측량성과 반영 및 면적변경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944호선	중로2-944호선	• 면적변경: 133,580㎡ → 130,923㎡ 감)2,657㎡	• 분할측량성과 반영 및 면적변경에 대한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중로2-135호선	중로2-135호선	• 면적변경: 4,862㎡ → 5,687㎡ 증)825㎡	• 가·감속차로부 분할측량성과 반영 및 면적변경에 대한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4) -)	면 적(㎡)			최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변경	101	광장	교통광장	선주지동 229-13일원	27,355	증)43	27,398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81호 ('20.03.16)	경미한 변경 (자연녹지지역)	
변경	102	광장	교통광장	이화동 199-1일원	28,653	감)1,006	27,647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81호 ('20.03.16)	경미한 변경 (자연녹지지역)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1	광장	- 면적: 27,355㎡ → 27,398㎡	증) 43㎡	• 분할측량성과 반영 및 면적 변경에 대한 변경결정 (경미한 변경)
102	광장	- 면적: 28,653㎡ → 27,647㎡	감) 1,006㎡	• 분할측량성과 반영 및 면적 변경에 대한 변경결정 (경미한 변경)

2. 실시계획인가(변경)

- O 사업시행지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산 95번지 일원
- O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944호선, 중2-135호선, 중2-508호선)사업 도시계획시설(광장: 101호, 102호)사업
 - 명칭: 인천검단신도시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 O 사업의 면적(변경) 및 규모(변경 없음)
 - 사업면적: 당초196,187㎡ / 변경193,262㎡(감2,925㎡)
 - · 사유: 분할측량성과에 따른 면적변경
 - 사업규모
 - · 중로2-944호선: 폭원 B=17.5~70.7m , L=3,202m, 전체시행
 - · 중로2-135호선: 폭원 B=15~25.2m , L=103m, 일부시행 [가·감속차로L=217m(감속차로L=33m, 가속차로L=184m), 전체시행 포함]
 - · 중로2-508호선: 폭원 B=15.0m , L=127m, 일부시행
 - · 광장 101호: 면적 A=27,398㎡, 전체시행
 - · 광장 102호: 면적 A=27,647㎡, 전체시행
- O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 O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없음)
 - 2020.12.7. ~ 2023.12.31.
- O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과 같음.
-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

- 공 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중로2-944호선, 중로2-135호선, 중로 2- 508호선, 광장 101호, 광장 102호

3. 지형도면

- O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53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3-9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 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로과 2032-440-3722), 인천광역시 종합건설 본부(2032-440-5329),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2032-560-4763) 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2.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결정(변경)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 O 위치(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대1-18호선(기점) ~ 부천시계(종점)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 장			사용	주 요	최 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기 능	(m) 기점		종 점		- 경과지		비고
기정	광로	3	9	40 (32~55)	주간선 도로	16,260	송림동 대1-18	부천시계	일반 도로	-	'76. 7. 8.	
변경	광로	3	9	40 (32~55)	주간선 도로	16,260	송림동 대1-18	부천시계	일반 도로	-	76 / R	일부구간 폭원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3-9	광로3-9	일부구간 폭원 변경	서구 석남동 223-693번지 일원 물류 센터 주변 차로확장 ※ 면적변경(117,370㎡→117,661㎡)

2. 실시계획인가

O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693번지 일원

O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9호선)사업

- 명칭: 석남동 물류센터 주변도로(광로3-9호선) 확장공사

O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291㎡

- 규모: L=137m, B=32~55m(1차로 확장)

O 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아시아신탁주식회사 대표 배일규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O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12.31.

- O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 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9호선): L=137m, B=32~55m

3. 지형도면

- O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용 지 조 서

○시설명: 광로3-9호선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 계	(지분)
1	석남동	223–508	유	25	25	戌0	인천광역시				
2	석남동	223-896	잡	64	64	Fl0	인천광역시				
3	석남동	223–693	잡	1,844	40	0Ы이 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4	석남동	223-504	잡	116	64	FIO	인천광역시				
5	석남동	223–897	잡	173	98	구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54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고시 합니다.

2022. 2. 28.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4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송림체육관 지상1층 용도변경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28,994.5㎡ 중 9,446.5㎡

○ 규 모: 송림체육관 1층(7,243.82 m²) 용도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丁世	용도	면적(m²)	용도	면적(m²)	—————————————————————————————————————	
1층	문화 및 집회시설	E 004 40	문화 및 집회시설	E 0.40.00	감76.13㎡	
	(관람장)	5,924.42	(관람장)	5,848.29		
	운동시설	507.70	운동시설	597.79		
	(연습경기장 외)	597.79	(연습경기장 외)	397.79	_	
	노유자시설	573.89	노유자시설	650.02	증76.13㎡	
	(어린이집)	373.09	(어린이집)	030.02	은10.12III	
	근린생활시설	147.72	근린생활시설	147.72		
	(소매점)	141.12	(소매점)	141.12		
	계	7,243.82		7,243.8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실시계획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2. 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m²)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성명	구분	-11-
1	동구 송림동	344	체	28,994.5	28,994.5	인천광역시		
합계	총	계		28,994.5	28,994.5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 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77호(2020. 07. 20.)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아암물류단지 광로2-1호선, 광로3-1호선, 대로1-1호선 준공, 1단계 1구역 준공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공부상 면적)와 물류용지 (Ci-3,4) 교통영향평가 심의 반영 및 획지분할(물류용지 Ci2, Ci4, Ci5, Ci6, 공공시설용지 Go3)에 따른 면적변경
- O 대로3-10호선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 중복 결정
-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의 시설번호 반영 및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등 실시계획 변경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없음)
-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 가. 개발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췌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1 6 -1(70)
합 계	2,625,730.0	증) 0.2	2,625,730.2	100.0
상 업 시 설 용 지	249,373.0	_	249,373.0	9.5
주 상 복 합	54,550.0	_	54,550.0	2.1
복 합 지 원	194,823.0	_	194,823.0	7.4
연 구 시 설 용 지	134,457.0	-	134,457.0	5.1
물 류 시 설 용 지	1,146,332.0	감) 668.5	1,145,663.5	43.6
- 공 공 시 설 용 지	1,095,568.0	증) 668.7	1,096,236.7	41.8
도 로	517,482.0	증) 696.3	518,178.3	19.7
보 행 자 전 용 도 로	1,191.0	_	1,191.0	0.1
주 차 장	10,214.0	_	10,214.0	0.4
공 원	311,315.0	증) 0.7	311,315.7	11.9
녹 지	229,222.0	감) 28.5	229,193.5	8.7
공 급 처 리 시 설	5,522.0	-	5,522.0	0.2
공 공 용 시 설	20,622.0	증) 0.2	20,622.2	0.8

※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0-77호(2020.07.20.)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 없음)

나. 면 적 : 기정) 2,625,730.0㎡

변경) 2,625,730.2㎡ 증) 0.2㎡

-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없음)
-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 없음)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 1]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붙임 2]
-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변경 없음)
-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따라 관계도면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3)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다.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합니다.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T U	기정	변경	변경후	T'8"I(%)	山北
	합 계	2,625,730.0	증) 0.2	2,625,730.2	100.0	
주거지역	소 계	190,582.0	_	190,582.0	7.3	
ナバハヨ	준주거지역	190,582.0	_	190,582.0	7.3	
상업지역	소 계	341,000.0	_	341,000.0	13.0	
경험시크	일반상업지역	341,000.0	_	341,000.0	13.0	
	소 계	1,602,590.0	중) 0.2	1,602,590.2	61.0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3,545.0	_	13,545.0	0.5	
	준공업지역	1,589,045.0	증) 0.2	1,589,045.2	60.5	
녹지지역	소 계	491,558.0	_	491,558.0	18.7	
	자연녹지지역	491,558.0	_	491,558.0	18.7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구	구 도면 표시 구 역 명 번호		위 치	,	면 적 (m	')	최초	비
분			71 (기 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변 경	1	아암물류단지(9공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297번지 일	동 2,625,730.0 일	증) 0.2	2,625,730.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78호(2014.10.20)	

-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가. 교통시설
- 1) 항만
- □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조서(변경)

구	ᅵᄽ씨ᄊᄶᄆ		시설의	دا دا		면 적(m)	최초	비
분	표시 번호	시설병	종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고
		계		-	2,571,180.0	증) 0.2	2,571,180.2	-	
기정	1		L 1	연수구 송도동 297 일원			2,571,180.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78호(2014.10.20)	
변경	1	항만 (물류)	항만배후 단지	연수구 송도동 297 일원	2,571,180.0	증) 0.2	2,571,180.2	//	

□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총괄표(변경)

7.8		면	적 (m²)		구성비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	비고
합계	2,571,180.0	증)	0.2	2,571,180.2	100.0	
물류시설용지	1,146,332.0	감) 668.5		1,145,663.5	44.6	
복합지원용지	194,823.0		-	194,823.0	7.6	
연구시설용지	134,457.0	-		134,457.0	5.2	
공공용시설	20,622.0	증) 0.2		20,622.2	0.8	
공공시설	1,074,946.0	증) 668.5		1,075,614.5	41.8	
도로	518,673.0	증)	696.3 519,369.3		20.2	
주차장	10,214.0		-	10,214.0	0.4	
공원	311,315.0	증)	0.7	311,315.7	12.1	
녹지	229,222.0	감)	28.5	229,193.5	8.9	
공급처리시설	5,522.0		_	5,522	0.2	

□ 항만 세부시설 중 물류시설용지, 복합지원용지, 연구시설용지, 공공용 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7 H	구분 도면표시 세부	세부	0)=1		면적(m²)		최초	비고
十七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		결정일	
	계		-	1,496,234.0	감) 668.3	1,495,565.7		
변경	1	물류시설 용지	연수구 송도동 297 일원	1,146,332.0	감) 668.5	1,145,663.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78호 (2014.10.20)	
기정	2	복합지원 용지	연수구 송도동 297	194,823.0	I	194,823.0	′,	
기정	3	연구시설 용지	연수구 송도동 297	134,457.0	-	134,457.0	<i>'</i> /	
변경	4	공공용 시설	연수구 송도동 297	20,622.0	증) 0.2	20,622.2	′/	

□ 항만 세부시설 중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합경	1		1 류			2 류			3 류	
구	분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m²)
합계	기정	29	15,567	518,673.0	4	1,794	65,262.0	1	193	11,073.0	24	13,580	442,338.0
업계	변경	29	15,567	519,369.3	4	1,794	65,498.7	1	193	11,095.4	24	13,580	442,775.2
광로	기정	6	4,686	177,910.0	-	-	_	1	193	11,073.0	5	4,493	166,837.0
お上	변경	6	4,686	208,853.0	_	-	_	1	193	11,095.4	5	4,493	197,757.6
대로	기정	20	10,043	327,742.0	3	1,366	56,086.0	-	-	-	17	8,677	271,656.0
네노	변경	20	10,043	297,220.7	3	1,366	56,051.7	-	-	_	17	8,677	241,169.0
중로	기정	2	639	11,830.0	1	428	9,176.0	-	-	_	1	211	2,654.0
75	변경	2	639	12,104.6	1	428	9,447.0	_	-	-	1	211	2,657.6
소로	기정	1	199	1,191.0	_	_	_	_	_	-	1	199	1,191.0
<u> </u>	변경	1	199	1,191.0	-	-	_	-	-	_	1	199	1,191.0

주1) 면적변경사유 : 공부상면적(지적측량결과) 반영 및 물류용지 Cil_3,4번 획지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의한 교통영향 평가 심의 반영

주3) 항만 세부시설 도로 총면적은 도시계획시설 도로(기정 : 143,890.5㎡ → 변경 : 173,912.8㎡) 중복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규	모			연장			사용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결정일	비고
합계		29개	노선		-	15,567	-	-	-	-	-
기정	광로	2	1	56.0	주간선도로	193	오폐수 처리장	광로3-1 (주)	일반도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복결정
변경	광로	2	(물류) 1	56.0	주간선도로	193	오폐수 처리장	광로3-1 (주)	일반도로	제2014-278호 (2014.10.20)	"
기정	광로	3	1	42.5	주간선도로	2,335	국제여객 터미널	동쪽교량	일반도로	"	′/
변경	광로	3	(물류) 1	42.5	주간선도로	2,335	국제여객 터미널	동쪽교량	일반도로	"	"
기정	광로	3	2	43.5	주간선도로	964	광로3-1(주)	수로부공원	일반도로	"	
기정	광로	3	3	40.0	주간선도로	237	6.8공구	광로3-1(주)	일반도로	"	
기정	대로	1	1	36.5	주간선도로	920	광로3-1(주)	왼쪽북측 교량	일반도로	"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복결정
변경	대로	1	(물류) 1	36.5	주간선도로	920	광로3-1(주)	왼쪽북측 교량	일반도로	′/	//
기정	대로	1	2	36.0	주간선도로	147	6.8공구	광로3-1(주)	일반도로	"	
기정	대로	1	4	35.5	보조간선도 로	299	국제여객 터미널	국제여객 터미널	일반도로	"	

(표계속)

주2)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시설번호) 반영

		규	모			연장			사용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역조 결정일	비고
기정	광로	3	4	40	보조간선 도로	426	광로3-2 (주)	대로1-4 (보)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2	29.5	보조간선 도로	749	광로3-2(주)	대로1-1(주)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3	28.5	보조간선 도로	432	광로3-2(주)	중로1-1(집)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4	28.5	보조간선 도로	749	광로3-2(주)	대로1-1(주)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5	25	보조간선 도로	283	광로3-1(주)	대로3-4(보)	일반도로	4	
기정	대로	3	6	25	보조간선 도로	190	대로3-4(보)	대로3-2(보)	일반도로	4	
기정	대로	3	7	25	보조간선 도로	366	대로3-2(보)	대로3-8(보)	일반도로	1,	
기정	대로	3	8	25	보조간선 도로	753	광로3-2(주)	대로1-1(주)	일반도로	4	
기정	광로	3	5	40	보조간선 도로	531	광로3-2(주)	국제여객 터미널	일반도로	1,	
기정	대로	3	10	25	보조간선 도로	747	광로2-1(주)	광로1-2(주)	일반도로	4	
변경	대로	3	(물류) 10	25	보조간선 도로	747	광로2-1(주)	광로1-2(주)	일반도로	4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1	29.5	보조간선 도로	678	대로1-1(주)	대로3-12(보)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2	28.5	보조간선 도로	739	대로1-1(주)	대로3-13(보)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3	25	보조간선 도로	1,245	대로3-12 (보)	대로1-1(주)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4	25	집산도로	190	대로3-12(보)	대로3-11(보)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5	25	집산도로	366	대로3-11(보)	대로3-13(보)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6	25	집산도로	192	대로3-12(보)	대로3-11(보)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17	25	집산도로	367	대로3-11(보)	대로3-13(보)	일반도로	4	
기정	대로	3	18	25	보조간선 도로	435	광로2-1(주)	광로3-3(주)	일반도로	4	
기정	대로	3	19	25	보조간선 도로	196	광로3-3(주)	공원]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428	광로3-1(주)	대로1-4(보)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211	대로3-19(보)	광로3-1(주)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199	광로3-1(주)	대로3-12(보)	보행자도로	17	

주1) 대로3-10호선은 항만세부시설 중 도로로 금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중복)결정 함

주2) 공부상면적(지적측량결과) 반영 및 물류용지 Cil_3,4번 획지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반영 주3)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시설번호) 반영

	항만	세부시설	중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	----	------	---	-----	--------	-------	-----

□ 항만 세부시설 중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

л н	도면 구분 표시		시설의	೧೩೩೩		면적(m²)		귀속 가디시	ul –
十七	표시 번호	· 149 45-		위치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초 결정일	비고
	계			_	311,315.0	증) 0.7	311,315.7	-	
변경	1	공원	근린 공원	연수구 송도동 300	302,872.0	증) 0.7	302,872.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78호 (2014.10.20)	
기정	2	공원	소공원	연수구 송도동 300	8,443.0	-	8,443.0	"	항만세부 시설(주차장) 중복결정

□ 항만 세부시설 중 녹지 결정(변경) 조서(변경)

¬ н	도면	시설	시설의	o) =1		면적((m²)		최초	ul –
구분	표시 번호	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비고
	계			-	229,222.0	감) 2	28.5	229,193.5	-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연수구 송도동300	26,188.0	증)	0.1	26,188.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78호 (2014.10.20)	
변경	2	녹지	완충 녹지	연수구 송도동 300	31,722.0	증)	3.1	31,725.1	<i>'</i>	
변경	3	녹지	완충 녹지	연수구 송도동 300	19,558.0	감)	1.6	19,556.4	′/	
변경	4	녹지	완충 녹지	연수구 송도동 300	60,501.0	감) 3	32.9	60,468.1	′/	
변경	5	녹지	완충 녹지	연수구 송도동 297	34,598.0	증)	5.6	34,603.6	′/	
변경	6	녹지	완충 녹지	연수구 송도동 298	56,655.0	감)	2.8	56,652.2	<i>'</i>	

□ 항만 세부시설 중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시설	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וע	번호	기정	변경	종류	1124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7122
		계			-	3,007.0	-	3,007.0	_	
변경	1	전기 공급 설비	전기 공급 설비 (물류)	변전 시설	연수구 송도동300	3,007.0	-	3,007.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21호 (2017.05.01)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 항만 세부시설 중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부	도면 표시	시식	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1 4	번호	기정	변경	종류	1124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175
		겨			-	2,515.0	-	2,515.0	_	
변경	1	하수도	하수도 (물류)	오수중계 펌프장	연수구 송도동 300	2,515.0	-	2,515.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21호 (2017.05.01)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중복결정

2)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	분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m²)
소나기	기정	3	3,448	143,890.5	1	920	33,580.0	1	193	11,073.0	1	2,335	99,237.5
합계	변경	4	4,195	173,912.8	1	920	38,804.8	1	193	11,095.4	2	3,082	124,012.6
7) 7	기정	2	2,528	110,310.5	-	-	_	1	193	11,073.0	1	2,335	99,237.5
광로	변경	2	2,528	116,380.8	-	-	_	1	193	11,095.4	1	2,335	105,285.4
-1) -7	기정	1	920	33,580.0	1	920	33,580.0	-	-	_	-	-	_
대로	변경	2	1,667	57,532.0	1	920	38,804.8	-	-	_	1	747	18,727.2
-	기정	-	-	_	-	-	_	-	-	-	-	-	_
중로	변경	-	-	_	-	-	_	-	-	_	-	-	_
, ,	기정	-	-	_	-	-	_	-	-	_	-	-	_
소로	변경	-	-	-	-	-	_	-	-	_	-	-	_

주1) 광로3-1호선, 대로1-1호선 준공에 따른 공부상면적(지적측량성과 및 일부 토지대장 분할에 따른 면적변경(297-10잡 외 21필지)반영에 따른 변경

주2) 대로3-10호선은 항만세부시설 중 도로로 금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중복)결정 함

주3)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시설번호) 반영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7	모			연장			사용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결정일	비고
합계		4개	노선		_	4,195.0	-	-	-	_	-
기정	광로	2	1	56.0	주간선도로	193.0	1 143	광로3-1(주)	일반도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변경	광로	2	(물류) 1	56.0	주간선도로	193.0	오폐수 처리장	광로3-1(주)	일반도로	제2014-278호 (2014.10.20)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기정	광로	3	1	42.5	주간선도로	2,335.0	국제여객 터미널 국제여객	동쪽교량	일반도로	"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변경	광로	3	(물류) 1	42.5	주간선도로	2,335.0	국제여객 터미널	- , -	일반도로	′/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기정	대로	1	1	36.5	주간선도로	920.0	광로3-1(주)	単々	일반도로	′/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변경	대로	1	(물류) 1	36.5	주간선도로	920.0	광로3-1(주)	り及旦之	일반도로	"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신설	대로	3	(물류) 10	25.0	보조간선도로	747.0	광로2-1(주)	광로1-2(주)	일반도로	-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나. 유통 및 공급설비

1) 전기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시설	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1 4	번호	기정	변경	종류	1124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1,35
		계			_	3,007.0	-	3,007.0	_	
변경	1	전기 공급 설비	전기 공급 설비 (물류)	변전 시설	연수구 송도동300	3,007.0	-	3,007.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21호 (2017.05.01)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다.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시식	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1 12	번호	기정	변경	종류	1124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1,32
		계			-	2,515.0	-	2,515.0	-	
변경	1	하수도	하수도 (물류)	주게	연수구 송도동 300	2,515.0	-	2,515.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21호 (2017.05.01)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중복결정

[붙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 가. 교통시설
- 1) 도로(변경)
- □ 도로 총괄표(변경)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	분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기정	3	3,448	143,890.5		920	33,580.0		193	11,073.0		2,335	99,237.5
합계	변경	4	4,195	173,912.8	1	920	38,804.8	1	193	11,095.4		3,082	124,012.6
	기정	2	2,528	110,310.5	-	-	_	1	193	11,073.0	1	2,335	99,237.5
광로	변경	2	2,528	116,380.8	-	-	-	1	193	11,095.4	1	2,335	105,285.4
대로	기정	1	920	33,580.0	1	920	33,580.0	-	-	-	-	-	_
네노	변경	2	1,667	57,532.0	1	920	38,804.8	-	-	-	1	747	18,727.2
중로	기정	-	-	-	-	-	-	-	ı	_	-	-	_
궁도	변경	-	-	-	-	-	-	-	ı	-	-	-	-
소로	기정	_	-	-	-	-	-	-	-	_	_	-	_
21.5	변경	-	-	_	-	-	-	-	-	-	-	-	_

주1) 면적변경사유 : 공부상면적(지적측량결과) 반영 및 구적면적 오차 정정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등급	규 류별	모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u>합</u> 계		4개	노선	<u>(III)</u>	-	4,195.0	_	_	-	-	-
기정	광로	2	1	56.0	주간선도로	193.0	오폐수 처리장	광로3-1(주)	일반도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변경	광로	2	(물류) 1	56.0	주간선도로	193.0	오폐수 처리장	광로3-1(주)		제2014-278호 (2014.10.20)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기정	광로	3	1	42.5	주간선도로	2,335.0	국제여객 터미널	동쪽교량	일반도로	"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변경	광로	3	(물류) 1	42.5	주간선도로	2,335.0	국제여객 터미널	동쪽교량	일반도로	//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기정	대로	1	1	36.5	주간선도로	920.0	광로3-1(주)	왼쪽북측 교량	일반도로	"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변경	대로	1	(물류) 1	36.5	주간선도로	920.0	광로3-1(주)	왼쪽북측 교량	일반도로	//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신설	대로	3	(물류) 10	25.0	보조간선도 로	747.0	광로2-1(주)	광로1-2(주)	일반도로	-	도시계획시설 (항만)중복결정

주2) 대로3-10호선은 항만세부시설 중 도로로 금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중복)결정 함

주3)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시설번호) 반영

나. 유통 및 공급설비

- 1) 전기공급설비
-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시수	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1 12	번호	기정	변경	종류	71/1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145
		계			-	3,007.0	-	3,007.0	-	
변경	1	전기 공급 설비	전기 공급 설비 (물류)	변전 시설	연수구 송도동300	3,007.0	-	3,007.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21호 (2017.05.01)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다. 환경기초시설

- 1) 하수도
-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시설	설명	시설의	위치		면적(㎡)		최초	비고
1 4	번호	기정	변경	종류	1121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1-72
		계			-	2,515.0	-	2,515.0	-	
변경	1	하수도	하수도 (물류)	오수 중계 펌프장	연수구 송도동 300	2,515.0	-	2,515.0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21호 (2017.05.01)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중복결정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1) 물류시설(Ci)(변경)

	1-		기 정			변 경		
도면	가구	다 기(2)		획 지	다 기(2)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면 적(㎡)	위치	면 적(m²)	면 적(㎡)	위치	면 적(m²)	
총계	_	1,146,332.0	42필지	1,146,332.0	1,145,663.5	42필지	1,145,663.5	
Ci1	Ci1	126,092.8	-1	39,581.0	125,424.8	-1	39,581.0	공동개발권장
			-2	39,756.5		-2	39,756.5	공동개발권장
			-3	23,429.7		-3	23,403.7	공동개발권장
			-4	23,325.6		-4	22,683.6	공동개발권장
Ci2	Ci2	127,625.0	-1	95,961.5	127,625.0	-1	95,962.6	
			-2	15,711.8		-2	15,711.6	공동개발권장
			-3	15,951.7		-3	15,950.8	공동개발권장
Ci3	Ci3	66,035.1	-1	32,954.7	66,035.1	-1	32,954.7	공동개발권장
			-2	33,080.4		-2	33,080.4	공동개발권장
Ci4	Ci4	66,623.2	-1	33,027.9	66,623.2	-1	33,029.5	
			-2	16,782.6		-2	16,782.3	공동개발권장
			-3	16,812.7		-3	16,811.4	공동개발권장
Ci5	Ci5	82,916.9	-1	37,103.9	82,918.6	-1	37,106.1	
			-2	22,772.0		-2	22,772.6	공동개발권장
			-3	23,041.0		-3	23,039.9	공동개발권장
Ci6	Ci6	87,857.0	-1	22,771.0	87,854.8	-1	22,772.5	공동개발권장
			-2	22,623.0		-2	22,620.4	공동개발권장
			-3	42,463.0		-3	42,461.9	
Ci7	Ci7	46,298.0	-1	23,266.0	46,298	-1	23,266.0	공동개발권장
			-2	23,032.0		-2	23,032.0	공동개발권장

(표계속)

	-1-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²)		획 지	면 적(m²)		획 지	비고
민소	킨모	한 역(Ⅲ)	위치	면 적(m²)	한 역(Ⅲ)	위치	면 적(m²)	
G 8	G8	82,855.0	-1	41,425.0	82,855.0	-1	41,425.0	공동개발권정
			-2	41,430.0		-2	41,430.0	공동개발권점
G 9	G9	83,865.0	-1	39,171.0	83,865.0	-1	39,171.0	공동개발권
			-2	44,694.0		-2	44,694.0	공동개발권
G10	G10	23,726.0	-1	23,726.0	23,726.0	-1	23,726.0	
all	G11	43,314.0	-1	10,946.0	43,314.0	-1	10,946.0	공동개발권
			-2	10,770.0		-2	10,770.0	공동개발관
			-3	10,711.0		-3	10,711.0	공동개발관
		•	-4	10,887.0		-4	10,887.0	공동개발관
G12	G12	53,752.0	-1	26,794.0	53,752.0	-1	26,794.0	공동개발관
			- 2	26,958.0		-2	26,958.0	공동개발관
G13	G13	73,729.0	-1	25,212.0	73,729.0	-1	25,212.0	공동개발관
		•	-2	25,043.0		-2	25,043.0	공동개발권
			-3	23,474.0		-3	23,474.0	
G14	G14	181,643.0	-1	17,920.0	181,643.0	-1	17,920.0	공동개발권
			-2	19,219.0		-2	19,219.0	공동개발관
			-3	19,219.0		-3	19,219.0	공동개발관
			-4	19,218.0		-4	19,218.0	공동개발권
			-5	19,217.0		-5	19,217.0	공동개발관
			-6	35,032.0		-6	35,032.0	공동개발관
			-7	27,035.0		-7	27,035.0	공동개발관
			-8	24,783.0		-8	24,783.0	공동개발관

2) 복합지원용지(Cs)

도면	가구	면 적(㎡)	;	획 지	비 고
번호	번호	면 겍(皿)	위 치	면 적(m²)	n 17
총계	-	194,823.0	-	194,823.0	
Cs1	Cs1	118,408.0	-1	25,056.0	공동개발(권장)
			-2	17,315.0	공동개발(권장)
			-3	40,923.0	
			-4	35,114.0	
Cs2	Cs2	76,415.0	-1	9,121.0	공동개발(권장)
			-2	7,744.0	공동개발(권장)
			-3	7,744.0	공동개발(권장)
			-4	7,744.0	공동개발(권장)
			-5	9,558.0	공동개발(권장)
			-6	8,163.0	공동개발(권장)
			-7	8,163.0	공동개발(권장)
			-8	8,163.0	공동개발(권장)
			-9	10,015.0	

3) 연구시설용지(Ri)

= 메비축	기기비송	rri 고i(2)		획 지	ען ד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²)	위 치	면 적(m²)	비고
<u>총</u> 계	-	134,457.0	-	134,457.0	
Ril	Ri1	134,457.0	-1	10,844.0	
			-2	42,292.0	공동개발(권장)
			-3	38,175.0	공동개발(권장)
			-4	11,486.0	공동개발(권장)
			-5	10,324.0	공동개발(권장)
			-6	10,668.0	공동개발(권장)
			-7	10,668.0	공동개발(권장)

4) 주상복합용지(Rm)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조단번호	/r干빈오	년 석(표)	위 치	면 적(m²)	山工
총 계	-	54,550.0	-	54,550.0	
Rm	Rm1	36,367.0	-1	9,092.0	
			-2	9,092.0	
			-3	9,092.0	
			-4	9,091.0	
	Rm2	18,183.0	-1	9,092.0	
			-2	9,091.0	

5) 기타시설용지(변경)

가) 공공용시설용지(Go)(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가구	-1 -1/ %	7-7	획 지	-1 -1/ %	,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면 적(㎡)	위치	면 적(m²)	면 적(㎡)	위치	면 적(㎡)	, -
Go	Gol	9,573.0	Go1	9,573	9,573	Gol	9,573.0	
	Go2	5,049.0	Go2	5,049	5,049	Go2	5,049.0	
	Go3	6,000.0	Go3	6,000	6,000.2	Go3	6,000.2	
총계	-	20,622.0	3필지	20,622	20,622.2	3필지	20,622.2	

나) 주차장용지(변경 없음)

구분	도면	가구	면 적(㎡)		획 지	비고
十七	번호	번호	전 겍(III)	위치	면 적(㎡)	비포
	총 계	-	18,657.0	-	18,657.0	
기정	주	주1	8,443.0	주1	8,443.0	소공원내 중복결정
/1/8		주2	5,367.0	주2	5,367.0	
		주3	4,847.0	주3	4,847.0	

다) 하수도용지(변경 없음)

	도면	가구	-1 -1(0)		획 지	2
구분	번호	번호	면 적(㎡)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하1	-	2,515.0	하1	2,515.0	획지분할 불허

라) 전기공급설비용지(변경 없음)

그ㅂ	도면	가구	면 적(㎡)		비고	
구분	번호	번호	년 석(111)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전1	-	3,007.0	전1	3,007.0	획지분할 불허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 4.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10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2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1. 사업의 명칭: 송도랜드마크시티 A9BL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 없음)
-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아시아신탁주식회사 대표자 배일규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1번지

나. 대지면적: 67,157.96 m²

다. 연 면 적: 194,763.0803 m²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2층~지상49층/ 7개동/ 1,114세대
 - 84A형 299세대, 84A'형 33세대, 84B형 47세대, 84C형 138세대, 84D형 161세대, 84E형 181세대, 84F형 113세대, 84F'형 30세대, 88T형 8세대, 96T형 2세대, 97T형 2세대, 104T형 2세대, 105T형 2세대, 130형 88세대, 137T형 2세대, 139T형 2세대, 141T형 2세대, 143T형 2세대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등 14개동
- 4. 사업시행기간: 2021.12. ~ 2025.02.(변경 없음)
- 5. 변경사항: 흙막이 및 차수벽 일부 변경
- 6.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변경 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2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열람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1-2호선, 사업명: 중로1-2호선(주안1구역 서측도로)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9조 규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22. 2. 28.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484번지 ~ 주안동 592-2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류2호선)
 - O 중로1-2호선(주안1구역 서측도로) 도로개설공사
- 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조서
 - 도로 결정(변경) 내용

7 8		규	모		716	O(TL/)	기 점	ᄌᄓ	사용	주 요	최 초	ה וו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퐌 (m)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1	2	22	집산도로	409	광로 3-7	대로 3-172	일반 도로	_	인고 제2010-139호 2010.05.24.	
변경	중로	1	2	22~25	집산도로	409	광로 3-7	대로 3-172	일반 도로	_		가·감속 삭제

○ 도로 결정(변경) 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2호선	중로 1-2호선	○ 면적변경 - 당초: 5,590.7㎡ - 변경: 5,495.7㎡ (감 95㎡)	○ 감속차로 삭제에 의한 면적 변경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5,495.7㎡, 연장(L)=238m, 폭(B)=22~25m(5차로)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미추홀구청장

O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9.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O 열람 기간 : 2022. 2. 28. ~ 2022. 3. 14.

○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23), 미추홀구청 도시계획과

(\$\infty 880-4487)

10. 관계서류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계 인		· 비고
호	고 세시	\\ \\ \\ \\ \\ \\ \\ \\ \\ \\ \\ \\ \\		면적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니프
1	주안동	1417-63	대	177.2	31.4		김00	주안동 0000-00				
2	주안동	1417-64	대	128.4	128.4		박00	주안동 0000-00				
3	주안동	1417-60	대	164.8	6.8		김00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00길00, 000동 000호(잠원동,0000지구아파트)				
4	주안동	1417-61	모	25.0	25.0		공유지	인천광역시				
5	주안동	1417-59	대	167.4	7.6		유00	주안동0000-00	조00 (주(00은행)	인천 남동구 맛수서로00. 000동 000호(만수동, 0000 0단지아파트) 서울 중구 회현동0가000	근저 당권 근저 당권	
6	주안동	1417-58	대	69.1	69.1		구00	미추홀구 인주대로000번길0(주안동)			012	
7	주안동	1417-56	대	197.2	9.9		김0	충남 천안시 신계리 000 00아파트 000동0000호				
8	주안동	1417-57	대	184.3	184.3		박00	남구 인주대로000번길 0(주안동)				
9	주안동	1423-49	대	106.8	72.0		주안1구역주 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미추홀구 주안동 0000-0, 0 0층				
10	주안동	1417-115	대	223.7	223.7		박00	주안동 0000-00				
11	주안동	1423-48	대	34.8	34.8		주안1구역주 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미추홀구 주안동 0000-0, 0 0층				
12	주안동	1417-114	도	36.7	36.7		공유지	인천광역시				
13	주안동	1423-47	대	35.0	35.0		0 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000 장미아을000동000호				
14	주안동	1417-113	대	112.4	112.4		구00	미추홀구 인주대로000번길0(주안동)				
15	주안동	1423-39	대	30.2	30.2		나00	경기 평택시 비전0로 000, 000동 0000호(죽백동, 00소사000)	000신용협 동조합	인천 부평구 배곶로00(십정동)	근저 당권	
16	주안동	1449-17	도	36.2	36.2		공유지	인천광역시				
17	주안동	1449-19	도	2,742.5	1,537.5		공유지	인천광역시				
18	주안동	1417-23	대	152.9	61.7	1/2	권00	인천 미추롤구 한나루로000번길 00(주안동) 이처 여수구 머으글로000				
						1/2	이00 권00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000. 000동000호(동춘동, 000차아파트) 인천 미추롤구 <u>한나</u> 루로000번길				
19	주안동	1417-108	대	4.6	4.6	1/2	0 00 	00(주안동)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000. 000동000호(동춘동, 000차아파트)				
20	주안동	1424-52	대	38.8	38.8		김00	안산시 대부북동 000	000신용협 동조합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000번길 00-00	근저 당권	
21	주안동	1417-22	대	143.1	143.1		김00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000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호	2세시	시민	시숙	면적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기미그
22	TOL	1117.01		1000	40.0	1/2	한00	미추홀구 신기길00번길 00-00, 000호(주안동)	0 00	인천 옹진군 영종면 운북리000	근저 당권	
22	수안동	1417-24	대	120.8	40.0	1/2	구00	미추홀구 인주대로000번길 00-0(주안동)	0000 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0가 00-0	근저 당권	
23	주안동	1417-109	대	18.1	18.1		한00	미추홀구 인주대로000번길 00-0(주안동)	이00 0000은행	인천 옹진군 영종면 운북리000 서울 중구 태평로0가 00-0	근저당 권	
24	주안동	1417-21	대	138.3	138.3		정00	미추홀구 주안동 0000-00				
25	주안동	1424-51	대	38.1	38.1		김00	인천 서구 가좌동000 00아파트 000동000호				
26	주안동	1417-20	도	45.7	45.7		공유지	인천광역시				
						5/7	한00	인천 옹진군 자월면 자월서로 000번길 00-0	00수산업 협동조합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000-00	근저 당권	
27	수안농	1417-25	대	106.3	25.6	2/7	김00	서울 강서구 강서로0길 00-00, 000호(화곡동, 00빌라)				
20	スハに	1417 110	대	22.5	22.5	5/7	한00	인천 옹진군 자월면 자월서로 000번길 00-0	00수산업 협동조합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000-00	근저 당권	
20	구인당	1417-110	5	32.5	32.5	2/7	김00	서울 강서구 강서로0길 00-00, 000호(화곡동, 00빌라)				
29	주안동	1424-50	대	38.1	38.1		심00	경북 포항시 북구 대곡로 00, 000동 000호(두호동, 000차아이파크)				
30	주안동	1417-19	대	138.3	138.3		0 00	미추홀구 인주대로000번길 00(주안동)				
31	주안동	1424-49	대	24.6	24.6		주안1구역주 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미추홀구 주안동 0000-0, 0 0층				
32	주안동	1424-45	대	10.9	10.9		주안1구역주 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미추홀구 주안동 0000-0, 0 0층				
33	주안동	1417-18	대	143.3	143.3		변00	미추홀구 인주대로000번길 00(주안동)				
34	주안동	1417-26	대	103.3	12.4		대한예수교 장로회행복 한교회	미추홀구 주안동 0000-00				
35	주안동	1417-111	대	54.2	54.2		대한예수교 장로회행복 한교회	미추홀구 주안동 0000-00				
36	주안동	1449-18	도	29.7	29.7		공00	인천광역시				
37	주안동	1417-67	대	73.1	3.5		오00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00번길 0-0, 0동000호(00빌라)	00새마 을금고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000-0	근저 당권	
38	주안동	1417-116	대	71.8	71.8		오00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00번길 0-0, 0동000호(00빌라)	00새마 을금고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000-0	근저 당권	
39	주안동	1417-71	대	142.2	142.2		김00	미추홀구 주안중로00-00, 비0호(주안동, 00빌라)				
						1/3	송00	인천 영수구 옥련로00, 000동 0000호(옥련동, 00아파트)	000신용협 동조합	인천 부평구 배곶로00(십정동)	근저 당권	
40	주안동	536-6	대	18.0	18.0	1/3	송00	인천 연수구 선학로00, 0동000호(선학동, 00아파트)				
						1/3	송00	인천 연수구 독배로00번길 00, 0동 000호(옥련동, 00아파트)				
						1/3	송00	인천 영수구 옥련로00, 000동 0000호(옥련동, 00아파트)	000신용협 동조합	인천 부평구 배곶로00(십정동)	근저 당권	
41	주안동	536-5	대	14.0	14.0	1/3	송00	인천 연수구 선학로00, 0동000호(선학동, 00아파트)				
						1/3	송00	인천 연수구 독배로00번길 00, 0동 000호(옥련동, 00아파트)				
						5.29 /81	송00	인천 영수구 옥련로00, 000동 0000호(옥련동, 00아파트)	000신용협 동조합	인천 부평구 배곶로00(십정동)	근저 당권	
						5.29 /81	송00	인천 연수구 선학로00, 0동000호(선학동, 00아파트)				
42	주안동	537-19	전	4.0	4.0	5.29 /81	송00	인천 연수구 독배로00번길 00, 0동 000호(옥련동, 00아파트)			1	
						21.71 /27	주안1구역주 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미추홀구 주안동 0000-0, 0 0층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 비
						5.29 /81	송00	인천 영수구 옥련로00, 000동 0000호(옥련동, 00아파트)	000신용협 동조합	인천 부평구 배곶로00(십정동)	근저 당권	
						5.29 /81	송00	인천 연수구 선학로00, 0동000호(선학동, 00아파트)				
43	주안동	537-21	전	1.0	1.0	5.29 /81	송00	인천 연수구 독배로00번길 00, 0동 000호(옥련동, 00아파트)				•
						21.71 /27	주안1구역주 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미추홀구 주안동 0000-0, 0 0층				
						5.29 /81	송00	인천 영수구 옥련로00, 000동 0000호(옥련동, 00아파트)	000신용협 동조합	인천 부평구 배곶로00(십정동)	근저 당권	
						5.29 /81	송00	인천 연수구 선학로00, 0동000호(선학동, 00아파트)				
44	주안동	537-20	전	2.0	2.0	5.29 /81	송00	인천 연수구 독배로00번길 00, 0동 000호(옥련동, 00아파트)				
						21.71 /27	주안1구역주 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미추홀구 주안동 0000-0, 0 0층				
						5.29 /81	송00	인천 영수구 옥련로00, 000동 0000호(옥련동, 00아파트)	000신용협 동조합	인천 부평구 배곶로00(십정동)	근저 당권	
						5.29 /81	송00	인천 연수구 선학로00, 0동000호(선학동, 대진아파트)				
45	주안동	537-17	전	20.0	20.0	5.29 /81	송00	인천 연수구 독배로00번길 00, 0동 000호(옥련동, 00아파트)				
						21.71 /27	주안1구역주 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미추홀구 주안동 0000-0, 0 0층				
46	주안동	537-23	대	17.0	17.0		주안1구역주 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미추홀구 주안동 0000-0, 0 0층				
47	주안동	1417-117	대	51.7	51.7		0 00	주안동 0000-00				
48	주안동	1417-70	대	132.4	132.4		김00	인천 연수구 선학로 000, 000동0000호(선학동, 000아파트)				
49	주안동	1417-118	대	91.4	91.4		정00	주안동 0000-00	00캐피탈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애로0(여의도동)	근저 당권	
50	주안동	1417-17	대	91.3	91.3		성00	경기 군포시 고잔로000번길 00, 0000동 000호(산본동, 000아파트)	00화재해 성보험㈜	서울 중구 을지로00(을지로0가)	근저 당권	
51	주안동	1417-106	도	64.0	64.0		공유지	인천광역시				
52	주안동	1367-139	도	9.0	9.0		주안1구역주 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미추홀구 주안동 0000-0, 0 0층				
53	주안동	571-25	대	49.0	49.0		주안1구역주 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미추홀구 주안동 0000-0, 0 0층				
54	주안동	571-27	도	6.0	6.0		주안1구역주 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미추홀구 주안동 0000-0, 0 0층				
55	주안동	571-24	대	1.0	1.0		주안1구역주 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미추홀구 주안동 0000-0, 0 0층				
56	주안동	1417-75	대	155.9	83.1		조00	미추홀구 인주대로000번길 00-00(주안동)				
57	주안동	1417-74	대	144.2	144.2		최00	주안동 0000-00	00농협협 동조합	인천 남동구 만수동 0000-0	근저 당권	
58	주 아도	1417-119	ГН	63.0	63.0	1/2	배00	경기 부천시 신흥로00번길 00, 000호(심곡동, 수정맨션)				
<i></i>	1 50	1711-119	-11	03.0	03.0	1/2	박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안로00번길 00(분당동)				
59	주안동	1417-73	대	149.0	149.0		0 00	인천 연수구 새말로 00, 000동 000호(연수동, 00아파트)	000농업협 동조합	인천 연수구 한나루로000(옥련동)	근저당 권	
60	주안동	569-22	대	47.0	47.0		주안1구역주 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미추홀구 주안동 0000-0, 0 0층				

_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 비고
호	고세시 -	7.12	Γ.	면적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01-12
61	주안동	569-21	대	10.0	10.0		임00	임00 주안동 000-0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000번길 00-00	근저 당권	
62	주안동	569-19	대	36.0	33.3		주안1구역주 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미추홀구 주안동 0000-0, 0 0층				
63	주안동	569-3	대	196.0	31.9		주안1구역주 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	미추홀구 주안동 0000-0, 0 0층				
64	주안동	1417-105	대	42.0	42.0		공유자 전원지분					
65	주안동	1417-90	대	197.1	197.1	1/2	0 00	도화동 000-00				0
"	1 2 8	1417 50	-"	137.1	137.1	1/2	김00	도화동 000-00				
66	주안동	1417-89	대	148.5	148.5		김00	미추홀구 인주대로000번길 00(주안동)	(주)00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0가000	근저 당권	
67	주안동	600-1	_	50,537.3	138.3	591/5 1911.1	공유지	인천광역시				
67	ナビす	000-1		30,337.3	130.3	51320. 1/519 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L												
계				58,438.2	5,495.7							

□ 지장물조서

번	A TILT.	TIH	ㅁ刀이조리	ᄀᆓᇚᄀᄸ	편입 면적	전체 면적	 단위 ·		소유자	비고
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면적	면적	인위	성명	주소	미고
	TO F		건물(1층)	라멘조	20.32	97.58	m2	7100	미추홐구	
1	주안동	1417-63	건물(2층) 담장	라멘조 벽돌(H=1.5m)	20.32 14.00	97.58 14.00	m2 m	김00	미추홀구 주안동000-00	
			건물(지하)	철근콘크리트	269.13	269.13	m2			
			건물(1층)	조 철근콘크리트	199.24	199.24	m2			
			건물(2층)	소 철근콘크리트	209.32	209.32	m2			
2	주안동	1417-64	건물(3층)	조 철근콘 <u></u> 크리트	209.32	209.32	m2	박00	미추홀구 주안동0000-00	
			건물(4층)	조 철근콘크리트	209.32	209.32	m2			
			건물(5층)	조 철근콘크리트	209.32	209.32	m2			
3	주안동	1417-60	담장	조 벽돌(H=1.5m)	11.00	11.00	m	김00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00길 00, 00동 000호(0000지구아파 트)	
4	주안동	1417-59	담장	벽돌(H=1.5m)	11.00	11.00	m	유00	/ 미추홀구 주안동 0000-00	
			건물(지하1층)	철근콘크리트 조	106.12	106.12	m2		0000 00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 자	106.12	106.12	m2		미추홀구 인주대로000번길0(주	
5	주안동	1417-58	건물(2층)	설근콘크리트 조	88.72	88.72	m2	구00	인주대로000번길0(주 안동)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 조	71.32	71.32	m2			
6	주안동	1417-56	담장	벽돌(H=1.5m)	12.00	12.00	m	김0	충남 천안시 목천면 신계리 000 00아파트000동 0000호	
			건물(1층)	연와조	49.69	46.69	m2			
7	주안동	1417-57	건물(1층)	연와조	26.44	26.44	m2	박00	남구 인주대로0 <u>00</u> 번길	
'	구인증	1417-57	건물(부속건물)	시멘트벽돌/슬 라브	4.69	4.69	m2		0(주안동)	
			수목		4	4	주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 조	83.30	83.30	m2			
8	주안동	1417-22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 조	83.30	83.30	m2	김00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000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 조	85.85	85.85	m2		1124 000	
			담장	벽돌(H=1.5m)	12.00	12.00	m			
			건물(지하)	철근콘크리트 조	26.46	26.46	m2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 조	39.77	91.14	m2	٦١ <u>٥</u> ٥	인천 미추롤구	
9	주안동	1417-23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 조	39.77	88.29	m2	권00, 이00	인천 미추롤구 한나루로000번길 00(주안동)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 조	39.77	81.09	m2			
			담장	벽돌(H=1.5m)	17.00	17.00	m			
			건물(1층)	연와조	42.48	42.48	m2			
			건물(1층)	연와조	30.52	30.52	m2			
10	10 주안동	1417-21	건물(2층)	연와조	68.35	68.35	m2	정00	미추홀구 주안동 0000-00	
			창고(부속건물)	시멘트벽돌/슬 라브	1.00	1.00	m2			
			수목	목련	3	3	주			

번	ᄉᆀᆀ	TIH	물건의종류	그ㅈ미ㄱ겨	편입 면적	전체 면적	EF OI		소유자	비고								
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공류	구조및규격	면척	면적	단위	성명	주소									
			건물	연와조	22.23	66.78	m2											
		1714-24	건물(부속건물)	시멘트벽돌/슬 라브	6.15	6.15	m2		미추홀구									
11	주안동		담장	다브 벽돌(H=1.5m)	18.10	24.60	m2	구00, 한00	신기길00번길 00-00.									
			수목	감나무	10.10	1	TII2 주	200	000호(주안동)									
			대문	EA	1	1	EA											
			건물(1층)	연와조	17.65	73.39	m2											
			건물(2층)	연와조	17.65	62.73	m2	하이 인천 옹진군 자	인천 옹진군 자월면 자월서로 000번길									
12	주안동	1417-25	건물(부속건물)	시멘트벽돌/슬 라브	6.15	6.15	m2	한00 김00	자월서로 000번길 00-0									
			대문	보다으로 설계 설계	1	1	EA		00 0									
			건물(지하)	철근콘크리트	20.58	20.58	m2											
			단말(시어)	조	20.30	20.30	1112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 조	81.43	81.43	m2											
13	주안동	1417-19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 조	78.68	78.68	m2	0 00	미추홀구 인주대로000번길 00(주안동)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 조	66.88	66.88	m2		00(+166)									
			수목	 단풍	1	1	주											
			담장	벽돌(H=1.5m)	16.00	16.00	m											
			건물(1층)	연와조	13.17	69.75	m2											
			건물(2층)	연와조	13.17	49.41	m2											
14	주안동	1417-26	건물(부속건물)	시멘트벽돌/슬 라브	4.96	4.96	m2	000교회	미추홀구 주안동 0000-00									
			수목	4-	4	4	주	1										
			담장	벽돌(H=1.5m)	17.00	17.00	m											
	TO F		메쉬펜스	H=2.0m	23.00	23.00	m	인천광역										
15	주안동	1417-18	수목		4	4	주	시										
			건물(지하)	연와조	8.89	8.89	m2											
			건물(1층)	연와조	13.17	73.22	m2											
	주안동		건물(부속건물)	시멘트벽돌/슬 라브	9.45	9.45	m2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00번길 0-0, 0동000호(00빌라)									
16		주안동	1417-67	1417-67	1417-67	1417-67	1417-67	1417-67	1417-67	1417-67	1417-67	수목	감나무	1	1	주	오00	와도읍 비룡로00번길 0-0,
			담장	벽돌(H=1.5m)	15.00	15.00	m		0동000호(00밀라)									
			대문	철재	1	1	EA											
			건물(1층)	연와조	48.00	48.00	m2											
			건물(1층)	연와조	29.42	29.42	m2		川太吉コ									
17	주안동	1417-71	건물(2층)	연와조	77.42	77.72	m2	김00	미추홀구 주안중로00-00, 비0호(주안동,									
17	140		건물(부속건물)	시멘트벽돌/슬 라브	5.38	5.38	m2	- 00	비0호(주안동, 00빌라)									
			담장	· '	2.50	2.50]									
				벽돌(H=1.5m) 연와조			m m2											
			건물(지하) 건물(1층)	연외조 연와조	10.80 30.60	10.80 66.51	m2 m2											
18	주안동	1417-117	건물(1등) 건물(부속건물)	시멘트벽돌/슬 라브	4.49	4.49	m2 m2	0 00	주안동 0000-00									
			담장	ㅋ <u></u> 벽돌(H=1.5m)	51.90	51.90	m											
			건물(지하)	연와조	8.19	8.19	m2											
			건물(1층)	연와조	66.51	66.51	m2											
19	주안동	1417-70	건물(부속건물)	시멘트벽돌/슬 라브	6.21	6.21	m2	김00, 김00	인천 연수구 선학로 000,									
13	140	1717-70	담장	니드 벽돌(H=1.5m)	19.00	19.00	m	김00	00동000호(선학동, 000아파트)									
			대문	철재	1	1	EA											
			건물(지하)	연와조	9.71	9.71	m2											
			건물(1층)	연와조	42.46	82.41	m2											
20	주안동	1417-118	담장	벽돌(H=1.5m)	15.50	15.50	m2	정00	주안동 0000-00									
20	160	1717-110	대문					500	1 5 0000-00									
				철재	1	1	EA											
			수목	감나무	2	2	주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편입 면적	전체 면적	단위		소유자	비.
호	고에서	시킨						성명	주소	-ات
			건물(지하)	연와조	5.15	5.15	m2			
		1417-17	건물(1층)	연와조	50.08	50.08	m2		경기 군포시	
21	주안동		건물(부속건물)	연와조	1.42	1.42	m2	성00	고잔로000길 00, 000동 000호(산본동,	
			대문	철재	1	1	EA		00아파트)	
			담장	벽돌(H=1.5m)	4.00	4.00	m			
			건물(지하)	연와조	20.79	20.79	m2			
			건물(1층)	연와조	36.00	78.94	m2		-1	
22	주안동	1417-75	건물(부속건물)	연와조	2.08	2.08	m2	조00	미추홀구 인주대로000번길	
	, 20		대문	철재	2	2	EA		00-00(주안동)	
			담장	벽돌(H=1.5m)	18.00	18.00	m			
			수목	포도나무	2	2	주			
				건물(지하) 연와조 19.66 19.66 m2						
			건물(1층)	연와조	76.66	76.66	m2			
23	주안동	1417-74	건물(부속건물)	연와조	2.11	2.11	m2	최00	주안동 0000-00	
			대문 담장	철재 별도(4, 1.5~~)	1 20.70	20.70	EA			
			수목	벽돌(H=1.5m) 석류	30.70	30.70	m 주			
			건물(지하)	역류 연와조	20.79	20.79	m2			
			건물(지하)	연와조	35.19	78.94	m2		경기 부천시	
24	주안동	1417-119	건물(부속건물)	연와조	0.99	0.99		배00, 박00	│ 신흥로00번길 00.	
4	구신 등	1417-119		_ ,			m2	박00	000호(심곡동, 00맨션)	
			대문 담장	철재	1010	1	EA		00 = =)	
				벽돌(H=1.5m)	18.10	24.20	m			
			건물(지하)	연와조	20.79	20.79	m2			
			건물(1층)	연와조	78.94	78.94	m2		인천 연수구 새말로	
25	주안동	1417-73	건물(부속건물)	연와조	2.08	2.08	m2	0 00	00. 000동	
23	120	1117 75	대문	철재	2	2	EA	- 100	00호(연수동, 00아파트)	
			담장	벽돌(H=1.5m)	21.73	21.73	m		30 1 1—)	
			수목	감나무	1	1	주			
		1417-90	건물(지하)	연와조	18.90	18.90	m2		미추홀구 도화동 000-00	
			건물(1층)	연와조	81.63	81.63	m2	-		
26	スハに		건물(2층)	연와조	68.49	68.49	m2	0 00,		
26	주안동		대문	철재	2	2	EA	- 김00, - 김00		
			담장	벽돌(H=1.5m)	24.50	24.50	m			
			수목		9	9	주			
27	주안동	1417-105	포장	콘크리트	42.00	42.00	m2	공유자전 원지분	주안동 0000-00	
21	1 12 0	1417-103	수목		2	2	주	원지분	158 0000-00	
			건물(지하)	철근콘크리트 조	76.67	76.67	m2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 조	82.77	82.77	m2		미추홀구 도화동	
28	주안동	1417-89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 조	74.83	74.83	m2	김00	000-00 기수불구 도와동	
			건물(부속건물)	시멘트벽돌/슬 라브	1.62	1.62	m2			
			담장	벽돌(H=1.5m)	2.50	2.50	m			
			건물	철근콘크리트 조	2557.99	2699.20	m2			
			건물	연와조	1188.27	1646.36	m2			
		건물	라멘조	40.64	195.16	m2				
	계		건물	시멘트벽돌/슬 라브	49.10	49.10	m2			
All			포장	콘크리트	42.00	42.00	m2			
			담장	벽돌(H=1.5m)	332.53	345.13	m			
			담장	메쉬펜스	23.00	23.00	m			
			수목		35	35	주			
			대문	철재	14	13	EA			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2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8.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 치: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
- 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표	도면 표시	공원명	시설의	위치		면 적(㎡)		최초	비고
	번호		종류	#14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	소래A	근린 공원	남동구 논현동 33-16일원	-	증) 318,670	318,670		
신설	-	소래B	문화 공원	남동구 논현동 66-12일원	-	중) 90,400	90,400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래A	○ 근린공원 신설 - 318,670㎡	○ GB훼손지역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역의 거주민 및 주변지역 이용객들의 휴식 및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고자 함
-	소래B	○ 문화공원 신설 - 90,400㎡	 데미콘공장 부지에 대하여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 ·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고자 함

2.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3,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3층)
-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032-458-7048, 남동구 정각로 29, 민원동 3층)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2, 남동구 소래로 633, 본관 3층)
-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28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열람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 또는 단체 등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28.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1가8-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문화시설
- 명 칭: 개항장 역사산책 공간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1,960.2 m²
- 규 모: 주차장 등 증축, 데크(산책길)설치, 건축물 세부용도변경 등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장(재생콘텐츠과)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3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3-3		면적	(m²)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 리 관 계
1	인천 중구		31	001.0	001.0	정**	부*시 **로 1**, 9**동 2***호 (*동, 위****)	1/2			
	송학동1가	8-1	대	331.2	331.2	소**	부*시 **로 1**, 9**동 2***호 (*동, 위*****)	1/2			
2	인천 중구 송학동1가	8-3	대	301.2	301.2	인천광역시					
3	인천 중구 송학동1가	8-4	대	195.0	195.0	인천광역시					
4	인천 중구 송학동1가	8-5	대	132.2	132.2	인천광역시					
_	인천 중구	0.5	~11	105.5	105.5	정**	부*시 **로 1**, 9**동 2***호 (*동, 위****)	1/2			
5	송학동1가	8-7	대	185.5	185.5	소**	부*시 **로 1**, 9**동 2***호 (*동, 위*****)	1/2			
6	인천 중구 송학동1가	8-8	대	33.7	33.7	국 (기획재정부)					
7	인천 중구 송학동1가	8-9	도	0.7	0.7	국 (기획재정부)					
8	인천 중구 송학동1가	11-1	공	13,486.5	9.0	인천광역시 (교육감)					
9	인천 중구	11 0	대	237.2	007.0	정**	부*시 **로 1**, 9**동 2***호 (*동, 위****)	1/2	중소기업 은 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근저당 권자
9	송학동1가	11-2	내	231.2	237.2	소**	부*시 **로 1**, 9**동 2***호 (*동, 위*****)	1/2			
10	인천 중구 송학동1가	11-11	대	112.4	112.4	인천광역시					
11	인천 중구 송학동1가	11-12	대	108.1	108.1	인천광역시					
12	인천 중구 송학동1가	11-22	대	235.5	224.0	인천광역시					
13	인천 중구 송학동1가	12	도	5,957.0	90.0	국 (국토교통부)					
	합 계			21,316.2	1,960.2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
-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남동구 정각로29)
-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 중구 송학동1가 6)
- 10. 관계서류: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529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8.

인 천 광 역 시 장

- 1. 등록 및 폐기사유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신설
- 2. 최초사용연월일: 2022. 2. 28.
- 3. 폐기연월일: 2022. 2. 28.
- 4.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참고

등록 공인명 및 인영

		r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정책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정책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정책	안천광역시 자원순환시설
과 분임물품출납원인	과 분임재무관인	과 일삼경비출납원인	과 분임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	인도방역시	의전장역시
대원순진장	시자원순	차원순진장	지원순진시
학교본당당	한정복과	택과당상경	설립인의
목흥남원인	토임까무진인	비출납원인	플출발원인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시설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시설	인천광역시 매립지정책과	인천광역시 매립지정책과
과 분임재무관인	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분임물품출납원인	분임재무관인
인천광역	인천광역시	인단망역시	이러망역시
시자원순	개원순천시	메일지정책	메립기정
판시설과	설과일상경	가면임물품	백과본의
뿐임재무만인	방출납원인	즉답건인	대무관인
인천광역시 매립지정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트린장역시 대립시정복 기업상경비 중남원인			

폐기 공인명 및 인영

임재무관인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 일 상경비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 분임물품 출납원인
의천망역 시기인순 환과본임 재무관인	지원 출시 기계	인천광역시수 도 권해결료축 대한 분명물 본출 남원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 일상경비 출납원인		
인성광역시수 도개생으로 부 진단의상검 비료를 할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 일상경비 출납원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 일상경비 출납원인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3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공고 · 열람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8.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문학경기장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문학경기장 소매점(부1) 설치 사업(용도변경)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면 적: 432,034.6 m²(문학경기장) 중 669.39 m²
- 규 모: 구장 내 외야출입구(부1) 통제실 및 관리사무소

ŻН	기정		변경		nj –i
층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비고
지하2층	운동장시설(기전실)	2,984.63	운동장시설(기전실)	2,984.63	
지하1층	운동장시설(기전실)	95.25	운동장시설(기전실)	95.25	
 1층	운동장시설	669.39	운동장시설 (통로, 화장실)	550.45	변경
10	(통로, 화장실)	009.39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18.94	변경
りる	운동장시설 (관리사무소)	458.9	운동장시설 (관리사무소)	458.9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216.88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216.88	
소 계		4,425.05		4,425.05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인천광역시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공예정일: 실시계획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2. 4.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m²)	소유	비고	
	TIA	긴	기국	공부	편입	성명	구분	11111
1	미추홀구 문학동	482	체	197,962.4	197,962.4	인천광역시		
합계	총	계		197,962.4	197,962.4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 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8.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032-440-1713, 남동구 정각로29 민원동 3층)
- 미추홀구 도시계획과(☎032-880-4496,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1청사 1층)
-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37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 제6항에 의하여 '2022년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인천광역시장

- 1. 심의일시 : 2022. 2. 22.(화) 14:00
- 2. 심의장소 : 인천광역시청 공감회의실
- 3. 심의작품
 - 총 10작품
- 4. 심의결과
 - 가결 7작품, 부결 3작품
- 5. 작품별 심의결과 : 첨부
-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0작품 중 가결 7작품, 부결 3작품

연	번	시 =1 =1 ~4	スコ	2) <u>1</u> 2 m²	기표시되기	심의	결과	ul →
건물	작품	설치지역	종류	작 품 명	작품이미지	가결	부결	비고
1	1	중구 신흥동1가 34-25	조각	Gate - 틈		0		
2	2	연수구 송도동 21-16외	조각	Curve Special Effects			0	
3	3	중구 운남동 1766-2	조각	Meta Seed		0		
4	4	중구 신흥동1가 34-29	조각	사이-F			0	
	5		회화	키스	ig	0		
5	6	부평구 부개동 152-1번지외	회화	산이 산이 되 기까지 -green		0		
	7		회화	나의 즐거운 여행		0		
6	8	연수구 송도동 29-8	회화	사라지거나 자라나는 망 초		0		
7	9	서구 청라동	회화	비우기 위한 하루 20-2			0	
	10	153-2	회화	비우기 위한 하루 20-3		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46호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공고·열람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1. 열람사항: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주요 내용
- 2. 주요내용
 - 목표연도: 2040년
 - 계획구역: 1,381.348km²
 - 계획인구: 330만 명
 - 도시공간구조: 3도심 5부도심 8지역중심
 - 토지이용계획: 시가화용지(269.581km²), 시가화예정용지(59.589km²),

보전용지 1,052.178㎢

- 3.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12)
- 5.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갖추어 두었으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5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 사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자진반납) 공고

1) 업 체 명: (주)다온엔텍

2) 대 표 자 : 신성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9, 구월테크노밸리 B동 905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96호

6) 등 록 일 자 : 2016. 6. 29.

7) 말 소 사 유 : 자진반납

8) 말 소 일 자 : 2022. 2. 2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555호

제20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 다온 엔 텍

2) 대 표 자 : 신성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9, 구월테크노밸리 B동 905호

4) 등 록 번 호 : 제2022-1호

5) 등 록 일 자 : 2022. 2. 25.

6) 영 업 범 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제1항 1-3, 5-6, 8호 업무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공고 제2022-26호

공유재산 무단점유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유재산 무단점유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계고 공문을 방문 및 우편 송달(등기·일반)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처분내용:	공유재산	무단점유	가설건축물	등에	대하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계고(2차
\Box	기 뜨 게 ㅇ '			12212	0 1	_II L.	このコー	0011110	

□ 공고기간 : 2022. 2.28. ~ 2022. 3. 6.(7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단위: m²)

и пн	출생			송	달 내 용		ш
성명	연도	주 소	소재지	점유 면적	계고내용	자진철거 기 일	비고
㈜물레질 사랑 대표 이 * 환	1958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183 (동춘동 920-2 희망도예체험관 내)	인천.연수구 동춘동 920-2.	500	무단점유 가설건축물 등 행정대집행	'22. 3. 7.(월)	

※세부내역: 계고장 참조

□ 내용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로 공문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 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문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재무관리팀(☎ 032-720-2052)

2022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45호

부정당업자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통지하여야 하나, 우편(등기) 반송과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2. 28.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	처분			
	성 명 (명칭)	주식회사 다	<u> </u>				
당 사 자	주 소	경기도 성남/ 크란츠테크노	시 중원구)	1 둔촌다	배로 388, 7	722(상디	개원동,
	성 명 (대표자)	정재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처]결 이후	계약이	행을 하지 역	않은 자	
처 분 하 고 자 하 는 내 용	○ 부정당인	법자의 입찰 참기	사격 제학	한			
법적근거 및 조 문 내 용	○ 같은법 시 - 정당한 ○ 이행(제42 해 제출한 따른 공동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행령 제92조 제2항 유 없이 낙찰된 후 기 2조제2항에 따른 계익 : 하도급관리계획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이행을 포함한다)을	제2호 가목 계약을 체결한 이행능력 심 외주근로자 「건설산업」	는 하지 않은 .]사 또는 7 근로조건 기본법」 <i>저</i>	자 또는 계약을 세42조의3제2힝 이행계획에 관 세31조의2에 따	- 체결한 ·에 따른 : 한 사항, 른 하도급	이후 계약 평가를 위 제88조에 계획에 관
	기 관 명	인천광역시종합건	<u> </u> 설본부	부서명	총무부	담당자	이은미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활	불구 한나루	-로 607	전화번호	032-44	40-5141
청 문 실 시	청문일시	2022.3.22.(화)	14:00	장소		역시종합건 층 회의실	
	청문주재자 -	소속 및 직위	인천광역	시종합건설	<u> 본</u> 부 도로관리	l부 도로(운영담당 -
	이正十/개기	성 명			이 명 구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 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청서 			
성수번호		접수일지	F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u> </u>	
	① 예정된 처	분의 제목					
	청문의 일시	또는 의견제	출 기한				
신청내용	참여이유						
「행정절ᅔ	사법 시행령 .	제3조에 따리	나 위와 같이 행정 [;]	절차에 참여를	를 신청합	니다.	
「행정절기	차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리	가 위와 같이 행정 ⁷	절차에 참여를	를 신청합		임
「행정절기	차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리		절차에 참여를	를 신청합	년	얼
「행정절 <i>i</i>	가법 시행령 <u></u>	제3조에 따 ^리 귀하	마 위와 같이 행정 ² 신청인	절차에 참여를	를 신청합	년	월 명 또는 인
「행정절 <i>i</i>	사법 시행령 _고			절차에 참여를	를 신청합	년	
「행정절 <i>討</i>	차법 시행령」 없음			절차에 참여를	를 신청합	년	
				절차에 참여를	를 신청합	년	명 또는 연
첨부서류	없 음	귀하	신청인			년 (서	명 또는 0 수수 ⁵ 없 음
첨부서류 위 신청의	없 음	귀하	신청인 유 의 사 항			년 (서	명 또는 0 수수 ⁵ 없 음
첨부서류 위 신청의	없 음 대상이 된 행정 ² 나다.	귀하	신청인 유 의 사 항 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와 일자를	년 (서 ①란에 휴	명 또는 0 수수 ⁵ 없 음

선수번호	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	랍니다. □ <mark>접수일자</mark>	처리기간 3일
4 1 C X	Ad Ed	1	지디기단 0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성명(명칭)	
	당사자등	주소	
신청		시머(머ᅱ)	(전화번호:
내용		성명(명칭)	생년월일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	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심허가를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귀하	
	루 없음		수수료 없 음
첨부서류		유 의 사 항	
첨부서류			
1. 기재련 2. 위 신			-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ㅎ
1. 기재련 2. 위 신		설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ㅎ
1. 기재련 2. 위 신	청의 대상이 된 행정길		-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
1. 기재련 2. 위 신	청의 대상이 된 행정? 기 바랍니다.	설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를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 결정 처리기관

■ 행정절차법 시	l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이래의 유의사항	을 읽고 작성하시기 비랍 - 	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면(면소)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6/1/1				
		(전화번호:)
의견제출		(2:12.4)			
내용					
	OL 74				
	의 견				
	기 타				
「행정절차	법」 제27조제1	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	計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١ ـ ـ ٨ /	명 또는	01)
			(1)	3 초근	신)
		귀하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제201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22. 2. 28.(월요일)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기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형 접수번호	향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청문 제목	
신청내용	정명(명칭)	
「행정절치	· 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귀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성 → 접수 → 검토 → 결정 처리기관 (행정청) 서리기관 (행정청) (행정청)	♪ 신청인에게 통지
	210mm×297mm[世	백상지 80g/㎡(재활용품)]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72호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사실 등 통지 공시송달 추가 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1-151호(2021. 4. 12.)로 환지처분 공고하고 「 인천광역시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제11조(공고)에 따라 환지처 분 공고 사실 등에 대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 나, 거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아래 대상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추가 공고합니다.

> 2022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1. 공고기간 : 2022. 2. 28. ~ 2022. 3. 17.
- 2.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시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 3. 공시송달 내용
 - 환지처분 공고일 : 2021. 4. 12.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1-151호)
 - 환지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효과)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환지계획으로 정한 환지를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소멸합니다.
 - 청산금의 징수·교부에 관한 사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청산금) 및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규정에 따라 환지 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 청산금이 있는 경우, 우리본부에 신청하시어 청산철자(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이행하여야 하며,
 - ·납기일을 경과한 징수 청산금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규정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되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의2(청산금의 소멸시효)에 따라 청산금을 받을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 등기에 관한 사항
 - ·지구 내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는 정리와 토지 등기(청산금 징수 대상이나 납부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를 완료하였습니다.
 - ·단, 환지처분 공고 효력발생 전 매각된 체비지의 경우, 우리본부에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신청서(매각대장 상 명의변경 불허 등 권리가 설정된 경우 이에 대한 동의서 포함)"를 제출하여 토지등기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소유자가 등기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서식 및 상세 안내문 등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홈페이지(열린마당 자료실, https://www.incheon.go.kr/jonggeon)에 게시하였으며 소유자별 환지처분 내용은 우리본부로 별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이후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제8조(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당해업무가 서구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해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지역개발팀(전화 032-440-51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연		대 상 자	등기위	P편 발송 이력	(반송)	반 송	종전번
번	성 명	토지등기부 또는 체비지매각대장 상 주소	1차	2차	3차	사 유	(미전동)
1	임○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57	2021-04-16	2021-06-02	2021-07-28	주 소 불 명	161-2
2	임○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58	2021-04-16	2021-06-02	2021-07-28	주 불 명	302-2, 302-5
3	채○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에프 동 901호	2021-04-16	2021-06-02	2021-07-28	주 소 불 명	146-1
4	임○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38	2021-04-16	2021-06-02	2021-07-28	주 소 불 명	299–4, 299–7
5	장○수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길 20 (마전 동)	2021-04-16	2021-06-02	2021-07-28	주 소 불 명	300-4
6	김○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 1412	2021-04-16	2021-06-02	2021-07-28	주 불 명	산16-8
7	김○군	고양시 일산2동 624	2021-04-16	2021-06-02	2021-07-28	주 소 불 명	산16-8
8	김○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 1457	2021-04-16	2021-06-02	2021-07-28	주 소 불 명	산16-8
9	김○웅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56	2021-04-16	2021-06-02	2021-07-28	주 소 불 명	297-4, 298-5
10	김○호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1	2021-04-16	2021-06-02	2021-07-28	주 소 불 명	산22-1

연		대 상 자	등기약	P편 발송 이력	(반송)	반 송	종전번
번	성 명	토지등기부 또는 체비지매각대장 상 주소	1차	2차	3차	사 유	(미전동)
11	방○복	김포시 걸포동 255	2021-04-16	2021-06-02	2021-07-28	주 소 불 명	306-2
12	임○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58	2021-04-16	2021-06-02	2021-07-28	주 소 불 명	302-4
13	장○일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70	2021-04-16	2021-06-02	2021-07-28	주 소 불 명	300-2
14	조○선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689-37	2021-04-16	2021-06-02	2021-07-28	주 소 불 명	301-2 1
15	허○덕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50	2021-04-16	2021-06-02	2021-07-28	주 소 불	296-5
16	장○진	미배송				주 소 불 명	237-1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22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가. 총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부터 제3조 까지)
- 나. 안전감찰 유형 및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부터 제10조 까지)
- 다.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 까지)
- 라. 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 (2) 연락처: 2032-440-5749, FAX 032-440-8845, 전자메일 phy9656@korea.kr

4. 참고사항

- 가.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
- 나. 관계 법령
-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요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감찰"이란 시장이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안전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감찰부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안전감찰 활동

-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 1. 예방 안전감찰: 안전감찰대상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제거 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 2. 기획 안전감찰: 계절별·시기별·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고려하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안전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교육·훈련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 3.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위반이나 소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가.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나. 안전감찰대상기관이 재난관리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 제5조(안전감찰반 편성) ①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때 마다 안전감찰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안전감찰반은 안전감찰반장과 안전감찰 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안전감찰반장은 인천광역시 안전감찰관 중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안전감찰반원은 인천광역시 안전감찰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 무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③ 안전감찰관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안전감찰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감찰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중립과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안전감찰 준비)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 난관리의무위반 행위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 실시에 앞서,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 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 제8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안전감찰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 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
- 3. 안전감찰 기간과 감찰반 인원
- 3. 안전감찰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 4.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 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1.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안전감찰 계획의 개요를 안전감찰대상기관에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 안전감찰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에게 안전감찰을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3. 안전감찰관은 사실 증명에 필요한 조사를 위해 관계 직원의 출석, 답변 요구,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 4. 안전감찰관은 제3호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 5. 안전감찰관은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 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줄 수 있고, 이를 위해 자료 작성 장소를 인천광역시

별도의 공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공무 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10조(보고사항) ①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 활동이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1. 안전감찰보고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 등을 기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 2. 안전감찰 결과 처분요구서: 안전감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안전감찰대상기관 또는 관련 공무원 및 직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안전감찰 관련 업무의 추진체계 또는 현황
 - 2. 안전감찰 목적, 범위와 방법
 - 3.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
 - 4. 제3호 지적사항에 대한 권고 및 시정요구 사항
 - 5. 안전감찰을 통해 발견한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 6. 안전감찰관의 의견에 대한 안전감찰대상자의 변명 또는 반론
 - 7. 안전감찰이 미진하여 추가로 안전감찰을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제11조(처분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 안전부장관 및 시장이 발하는 재난 및 안전관련 비상근무 지시, 예규, 훈령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3.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거짓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부당한 정책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4. 자료 제출 및 관련자 면담의 요구, 자료의 작성 등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 제12조(처분기준) ① 시장은 안전감찰 결과 제1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 변상명령 요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 2.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으로 재난안전에 위해를 끼친 경우
 - 3. 시정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가 징수·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경고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

가 주의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5. 주의 요구: 안전감찰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6. 개선 요구: 안전감찰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통보: 안전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8. 현지조치 요구: 안전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안전감찰 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
- 9. 고발: 안전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인 천광역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등 범죄 고발규정」과「인천광역시 공무 원 행동강령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 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안전감찰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 제13조(처분심의회)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처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결과 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 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처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안전감찰 담담부서의 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안전감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내부 위원과 필요시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안전감찰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 ⑤ 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시장은 안전감찰의 결과로서 결정한 처분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처분요구서에 작성하여 해당 재 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통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을 따른다.
- 제15조(재심의신청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통보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 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재심의신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문서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안전감찰 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6조(재심의) ①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심의에 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① 재난안전법 제7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과 제86조의4에 따라, 안전감찰 대상자가 적극행정 면 책의 대상이 될 경우, 시장은 처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② 안전감찰관은 제9조에 따른 안전감찰 실시 전에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면책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되, 안전감찰 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안전감찰 전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고 면책사유에 해당 하는 증명 자료를 갖춰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안전감찰관이 제1항에 따른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심의를 거쳐야 하되, 면책심의와 관련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면책심의를 거쳐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처분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⑧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 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8조(처분의 효력) 시장은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처분을 받은 횟수를 반영하도록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제19조(이행실태) 재난안전법 제77조에 따라 처분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처분을 감경한 경우에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경고 등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기록유지) 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 장이 그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감찰 역량강화

- 제21조(안전감찰의 독립성) ① 시장은 안전감찰관을 배치하거나 안전감찰 활동을 할 때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안전감찰관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찰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전문역량 강화) ① 새로 임용된 안전감찰관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 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감찰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안전감찰관의 능력개발 및 안전감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감찰관 교육훈련,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③ 안전감찰 기구와의 안전감찰 기법 및 수범사례 등 공유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	전 감	찰 통	를 지	서			
감찰명								
감찰기간								
감찰대상								
감찰반								
주요 감찰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라 위	감찰에 대	해 사전	통지서입			-1
						년	월	일 또는 인)
							(시당 :	프는 인)

	<u> </u>	아 인 서		
제 목]				
내 용]				
확인자 의견]	위 사	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의견]	위 사 년	실을 확인합니다. 월 일		
확인자 의견 】 확인자 : 소속기관			직급	ㅇㅇㅇ (인)
	년	월 일	직급 직급	ㅇㅇㅇ (인) ㅇㅇㅇ (인)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지 제3호서식]			
	처	분 요 구 서	
	[행정상 :	/ 신분상 :]
【제 목】			
【소 관 청】			
【관계기관】			
【내 용】			
		210mm×297m	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지 제4호서식]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기관명 :

일련 번호	처분요구종류 (시행일)	제목	처분요구요지	처리결과	완결 여부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지 제5호서식]

처 분 대 장

일련 처분		처 분 대 상 자			- H II O	ш	
번호 일자	소속	직 위	직 명	성 명	처 분 사 유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저	[6호서식]
------	--------

재 심 의 신 청 서

1.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기 관 명	직 명	
	주 소 (기관의 소재지)		
2. 안전감찰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안전 감찰결과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안전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및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중

첨부서류: 표지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7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이 안전감찰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안전감찰을 받은 자 본인
 - ※ 안전감찰을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또는 안전감찰 전담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안전감찰을 받은 기관의 장
- 2. 신청기간 : 안전감찰 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행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재난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긴급구조·구호·대피 등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 하였을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을 것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절차를 거쳤을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및 회피한 경우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인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인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8호서식]

제2015호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면책 요건 검토	해당 여부	첨누	^보 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공공의 안 전과 국민의 생명보호)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추정)여부			
4)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 여부			
5)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			
- 자료 및 정보의 충분한 검토 여부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준수 여부			
- 업무처리를 위한 보고 여부			
면책 대상 제외 여부 검토	해당 여부	첨투	브서류
1)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고의 불이행, 지연 등 여부			
2) 금품수수 또는 편의제공을 받았는지 여부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 본질적인 사항 위배 여부 			
4) 위법 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여부			
5) 기타 위에 준하는 위법 부당 행위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	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을 받기 위하여 위외	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	V207mm(HIAFTI(20a/	2) [[\ \times \text{\tin}\text{\tin}\text{\texi}\text{\text{\text{\text{\text{\text{\text{\texi}\text{\text{\text{\text{\text{\texi}\text{\text{\texi}\text{\text{\texit{\text{\texi}\text{\texi}\text{\text{\text{\text{\text{\text{\tet

<관계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검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 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 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 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시설의 정밀안전 진단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다른 법령의 적 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른다.
-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 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 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 미리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수 있다.

-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①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재난응급조치·안전점검·재난상황관리·재난복구 등의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단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은 제52조제5항에 따른 현장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긴급구조요원의 명단을 해당 긴급구조요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해당 긴급구조요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중앙통제단장 및 지

역통제단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입증을 위한 전담기구를 편성하는 등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⑦ 제2항·제3항에 따른 통보 및 제5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86조(징계 요구 통보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직접 공개할 수 있다.
- ③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계 등의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내용을 6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자체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

련 자료의 제출 및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입증을 위하여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 등의 자료를 작성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 요구의 통보 등에 필 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한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제20조(기관경고의 방법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통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규칙 제정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없음.
-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최기건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2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2년 2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따른 조문 정비,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의 응시자격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명시된 중복 조문 삭제(안 제4조)
- 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11조제3항)
- 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정비(안 제20조제5항)
- 라. 결원보충 대상 확대(안 제43조제1항)
- 마. 인사교류 대상 확대(안 제44조)
- 바. 별표 및 별지 서식 보완·개선
- (안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9, 별표 10, 별표 16 및 별표 17)
-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u>2022년</u> <u>3월 21일까지</u>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인사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층 인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032-440-2517, FAX: 032-440-86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또는"을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 제8호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를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군·구 소속 공무원의 전입"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군·구 소속 공무원의 전입"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인사교류) 임용권자는 승진요인이나 사무형편 등으로 소속 공무원의 시의회 또는 군·구로의 전출, 시의회 또는 군·구 소속 공무원의 시로의 전입, 시의회 또는 군·구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또는 해당 군·구의 결원, 인사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고 사전에 전·출입인력규모를 협의하여 실시하되, 시의회 또는 군·구간의 균형이 유지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9, 별표 10, 별표 16 및 별표 17을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u>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9조 관련</u>)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_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_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 п · 0 · 0 / 1 / 1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_	변 호 사
		감 사	_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_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	r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호	복지	사회복지	_	변 호 사
구o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 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 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 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 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 비, 기계안전, 교통	산업기사자격 증가산비율:
		기 능 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 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공 업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 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 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 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 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 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 사: 산업기사:	조선 일반기계, 조선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 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 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 기 능 장 : 리 기 사 : 전자기기
		기 사: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 산업기사: 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자격증 기산비율 적용 :원자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로조종감독자, 한 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 사, 품질관리
		기 능 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
		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 사, 품질경영
공 업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 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 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위험물, 가스
		기 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사업기자: 청양료제조 의성무 사업이 전 기소 표지경영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 기 사: 지 과사 Hob 취양로과의 체양하면 체양자의계반 체양고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 산업기사: 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기 능 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업	일반농업	기 사: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식물검역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 학제품제조,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사: 산업기사:	축산, 식품 축산,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사: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 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지	산림자원	기 사: 산업기사: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	산림보호	기 사: 산업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 사: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사: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식물검역 생명유전 산림자원 산림이용	지 산립기사 : 전업기사 : 건업기사 : 건업기 : 건	지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 생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식원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배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승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립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상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가 능 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기 사 : 축산, 식품기 등 자 : 축산, 식목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기 등 사 : 종자, 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등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 등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 등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 등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상물보호, 임산가공기 등 사 : 조경, 종자, 산림, 얼합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기 등 사 : 소경, 종자, 산림, 얼합종묘, 임산가공기 등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일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가 : 산림, 일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가 : 산림, 입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가 : 산림, 임산가공기 등 사 : 산림, 임산가공기 등 사 : 산림, 임산가공기 등 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사: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일반수산	기 사: 산업기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 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기기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건	기 사:	1급 <i>,</i>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 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 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산업기사: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선비율 적용: 의시한의사, 치과의사약사, 한약사, 항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사 와당, 조성, 선님, 독물도로, 도당관성, 예당관성, 선립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부류, 기상, 광해방지	비율적용:의시 약사,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T		
· 환 경	수 질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등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 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 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가산 비율 적용:환경 측정분석사(수질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설문영보사/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정구/설문영보사/급 기능사 자격증 기산 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대 기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내기완경, 조음신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 비율 적용:환경 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등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산림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조경, 산림, 환경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즉량 및 지형 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즉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등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즉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도로 및 공항, 철도, 주자원개발, 상하수도, 중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고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걸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걸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설명, 전산응용토목제도,	
	수도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강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 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 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비율 적용 : 건축 사
	측 지	기 사: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 계	기 사: 산업기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 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사: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 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능 장 : 기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 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 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1			
시설관리	시설관리	산업기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 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 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기계 시설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세수리,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용접,특수용접,금형,기계정비, 판금제관,배관, 승강기	
	전기 시설	기 능 장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구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구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화공 시설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 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7]	계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 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 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	기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 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 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 전	기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 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 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 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 전, 품질경영	
	화 공	기 술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화 학	기 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 술 사: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 사: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 술 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식품, 농화학, 축산	산업기사 자격증
	\11 E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 H		식품, 축산, 유기농업	, , , , , , , ,
	작 물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농촌지도	농 업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	
		기 사:	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 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	
		산업기사 :	리, 기상, 유기농업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 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촌지도	잠 업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	작물보호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 자
	농촌생활	기 술 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기산 비율 적용: 평생교 육사 1급, 사회조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 생교육사 2급, 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회조시분석사 2급, 영양시,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평생교
			-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기산비율적용 : 청 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 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 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 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 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 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농촌지도	الد خا	기 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궁존시도	국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 경	기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
		기 사:	축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농존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수의사
	해양환경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연 구 	수산자원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u> </u>		

해양수산	수산양식	기 수 사ㆍ	수산양식, 수질관리	
연 구	1607	기 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비율적용 : 의사,
		기 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자연생태복원	
	1	1		

	ı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1.3-1-	1-61-7	-1 & 1		
	중업도목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 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行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 안전, 소방설비	
			2.2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 사: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6]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21조제1항 관련)

		계급	- -7.131	7	0.07
직렬		직류	5급이상	6 · 7급	8 · 9급
사회-	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 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 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 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 · 2급 정사서	1 · 2급 정사서, 준사서	1 ·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7]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	·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진료	보건진료	., .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	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 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 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 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 · 7급	8 · 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사(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위생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영양사 영양사
	사 역		3 871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9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 ·	7급	8 ·	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임상심리사2 급	통안전관리자직업상 담사2급, 사회조사분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 조사분석사2급, 임상 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6 · 7급, 연구/	사, 지도사	8 · 9	그 범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5**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9]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0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8 8 7 1 8	도·기궁군약 사격궁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데이터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공 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 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 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 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 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 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 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일반전기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 술 사 : 기 등 장 :	조선 일반기계,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 하다 하다그의 하는 하는 하다하는 기사사이 포함하셔 소하다 !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녹	지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원예, 버섯동판, 석품가동, 유기동업, 와웨양석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산업기사 :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지 램	기 근	rll 사 기 커 즈
시 보 건	보 건	대 상 자 격 증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가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시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폐기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정 비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시 설	도시계획	기 능 장 : 기 사 :	
	일반토목	기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 도토목	기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 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측 지	기 술 사 :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 계	기술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능 장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도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건축설비, 건축, 방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도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도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도건설자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도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조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기 능 장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터 방송통신, 정보처리
조리	조리	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	조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사역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이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여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기계 시설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성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상 등장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대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등장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 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기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승장기
	전기 시설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승강기
	화공 시설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 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 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 축인공수정 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시(3) 1급 기관시(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		직류 \					
의료기	[출	의료기술	임상병사(12) 발사(12) 발사(12) 발사(12) 기료사(12) 기료사(12) 기료 기계사(12) 기료 기계 (12) 기료 기계 (12) 기료 기계 (12) 기계 (12) 발사(12) 발사(12) 발사(12) 발사(12) 발사(12) 발사(12) 발사(12) 발사(12) 발사(12) 발사(12) 발사(12) 발사(12) 발사(12) 발사(12) 발사(12) 발사(12) 발사(12) 발사(12)	임상병료정보관리 사(8) 보건(8) 보건(8) 보신(8) 보시자(8) 물리과기사(8) 지과과기사(8) 지과과기사(8) 지과과기사(8) 지학생(8) 작년(1) 10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임상병료정보관리 보건의료정보관리 사(5) 방사(4)(5) 말리과기(5) 지교과기(5) 지교과기(5) 지교과기(5) 지교과기(5) 지조엄의로정보관리사(5) 안경사성(5) 반사성(5)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만	임상병리자보관리 보건의 보관리 사산(2) 보건의 사산(2) 물리과기위로 사(2) 치과임치료 사(2) 지과임치료 사(2) 보건의 로정보관리사(2) 약경사(3) 임상심리사(2) 임상심리사(2)	인상병의사 보건적 보관리 방사선료자 물리기생사 지과위료사 치과위료사 보건의료 보건의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 ,	, ,		
	İ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		간호조무	\	\ /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수 질 대 기 페기물	의사(2) 수의사(7) 약사(7) 약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청수시설운영관리 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청수시설운영관리 사 1급(3)	수의사 약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청수시설운영관리 사 1급	위생사(2) 청우시절운영관리 사 2급	위생사 청우시설운영관리 3급
ठें	공	일반항공	순종 보조주사 사 (5) 한 보조(10) 한 한 보조(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보자(6) 항공정보자(6) 항공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시위(3) 항공기위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조정비사(3)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과사 항공교 등관제사 항공소정비사 항공소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시(10) 항공공장정비시(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설	건 축 디자인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 수기술자)
<u></u> 속	7]	속기	건축사(5)	신국사	한글속기 1·2급(5)	하극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7		위생			위생시 (5),	1·2·3급(2) 위생시(2), 영양시(2)	위생사,
위	생	사역			위생시(5), 영양시(5) 영양시(5)	영양시(Ž) 영양시(2)	위생사, 영양사 영양사
운 7	전	운전			0 0 1(4)	0 0 1(4)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1. (삭제)

-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9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1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 (제20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 격 기 준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호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한시 임기제	7호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ই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ই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u>5호</u>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 기 제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16]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20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연구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연구관·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다목·제2호 다목 및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지도관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박사	8년	4년	_	-
경력	석사	12년	8년	4년	_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 · 7급	8 ·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 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 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 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 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정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 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자동차정비,건 설기계정비,용접,금형제작, 판금제관,배관) 기사(일반기계,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철도차량,자동 차정비,건설기계설비,건설기 계정비,궤도장비정비,기계설 계,용접,프레스금형설계,사 출금형설계,농업기계,에너지 관리,산업안전,품질경영,승 강기,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 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 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 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 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 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 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바:기계분야), 사진 기능사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 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 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 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 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 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 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 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 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 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 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 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 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 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 설비:전기분야)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 · 7급	8 · 9급
			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 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 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 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 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 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 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 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 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 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 괴검사, 침투비파괴검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 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 전 취득)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 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 가스)
	자 원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 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 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 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 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 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녹 지	산림자원	기술시(종자, 산림, 농화학, 조 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 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 · 7급	8 · 9급
·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가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시(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 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 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일반수산	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 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어 로	_ ^L	0 1, 1 2 10 12 0	
	해양교통 시 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 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 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 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 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	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 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 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 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 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 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 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 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 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직렬	직	계급 류	5급이상	6・7급	8 · 9급
의 무	- 0] 바의무	의사, 한의사		
	え				
약 무	- 0		약사, 한의사, 한약사		
	- Z			간호사, 조산사	
고 간호조두				(LL) () LL)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
27.6.63	- -	-7.0.0		선호기, 그런기	
환 경] 0	l 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 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 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 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 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 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등
	ŕ	-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	
	디] 7]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 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 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Ī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항 공	4 0	l 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 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 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3	<u> </u>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そ] 月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E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	
	Õ	<u></u> 반토목			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 · 7급	8 · 9급
	수도토목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 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 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
	건 축	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 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 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정보,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보, 지적)
		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 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 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 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 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 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 건축, 도시계획, 조경)	,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 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 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산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 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 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 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큰 리트, 철도토목, 토목, 흑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인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 · 7급	8 · 9급
		시공, 건축품질시험)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 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 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으로 본다.
 -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3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ᅿᆎ	(한글)	사 진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주민등록 번 호		_		(3.5cm×4.5cm)으로 2배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 소	(字)			
전자우편		복수	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	전화	

....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ㅇㅇㅇ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슬)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 두 동일워판을 붙임
-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78 5	(한자)	
생년월일	_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入のスカ
전자우편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슬)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감재	본인필적 :	응시번호	
정 용 란		21 7-1	(한글)
	생년월일 록번호 앞자리)	성명	(한자)

54 71 A)		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드	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우 수	
다 귀현이 아도 생성만 성속	판 정	보 통	
그 이이기 #기#크 커뮤시 기사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딩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감 재	본인필적 :	응시번호	
정 용 란		11-1	(한글)
	생년월일 록번호 앞자리)	성명	(한자)

75 71 A 2		위 원 평 정	
평 정 요 소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디	평)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1 112 1 1 2 3 3 2 3 1	[선 경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딩	•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015호 .지 제4호서식]		인 천 광 약		-	2022. 2. 28.(월.
· · · · · · · · · · · · · · · · · · ·		시험	요 구 서	1	
접수번호	기 관 7	개 인	an. i ∧	1	
	소속	2		3	직명
1		 시험 구분		임용예정 직 급	직류
	요구	L L		Э н	계급 급
	한글	⑤		6	직명
4	한자	 연령	만 세	현 직 급	직류
	271				계급 급
7	가.	8 필기시험		9 제 1 차시험	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선택과목	나.	면제사유	면제사유		응시번호
10			군제대자	*	대장번호
자격 · 면허 훈련 등		취업보호대상 여부	(복무기간) 유공자 및	대장 원본	확 인 자
순인 7		(해당란에○)	그 가족	확인	성명
위와	같이 요구함.			계	(사진)
	년 월 일	(인)		인 인	
,	시 험 요 구				
	시 행 차 수	1		2	3
	시행연월일				
※ 시 험	회 수	제 호	기 제	회	제 회
시행사항	응 시 번 호				
	결 과				
응시 번호		응 시	丑	계	
년	 시행 제	회 시험]	인	(사진)
임 용 예 ⁷ 성		(급 류)			
시험요구					
) =1)] ,	년 월 일]] 기 관 의 장 [(01)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 일한 규격

작 성 요 령

-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 2. 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 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 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① 란과 ① 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 1. 삭제
- 2.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 3.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 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u>임용</u> 3	후보자등록	원서(원	<u> 년본)</u>	및	· 시 연 ! 회	수 ()년도	_
※등록번호	제	회	번					응시	지구(7 시 번	[호] 호	지구	
※ 급			직					직	급	별	급	
	(한글	-)				② 희망	지역			※ 등	록심사	
① 성 명	(한문	-)				제1지역	벽	시 군	사	진대조	서류~	スロ
	(영문	-)				제2지역	격	시 군		(1)		
④ 주 소												
⑤ 연 락 처		번호 :								(사진부착)		
⑥ 병 역	# F	H 폰 :		변 여 피 / /) 면제 / O	កាចា / -	○ 러서					
₩ 8 =						미월 / '						_
					⁾ 학		력					_
부터			<i>까</i>	< 	학		력		전 	공・부분	 	_
												_
	(8 8 자	격 면	<u></u> 허				⑨ 상	}	벌		_
연 월 9	일		종		별	연	월 일		٨	}-	항	_
												_
												_
				10	경		력					
부터			かス	3	경	력	사	항			발 령 청	3
												_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임용권자) 귀히	}								

2022. 2. 28.(월요일)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 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녆 윌 일부터

일간

월 일까지 년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또는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과

- 3. 구비서류
 -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 · 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 4. 등록워서 제출방법
 -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 5. 원서기재요령
 -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 를 쓴다.
 -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⑨ 상
-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① 경
- ①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임용후보자명부

① 등록 번호	② 등록 연월일	③ 성명	④ 생년	⑤ 성별	⑥ 현주소	⑦ 최종	8 특기	⑨ 병열필	① 희망	11)신원조	사		12)추	천		13	임	용		
번호	연월일	0 0	월일	0 2	612	최종 출신 학교명		미필	희망 기관	의뢰	회보	송부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연월일	직명	근무 관서	비고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①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했 개 정 아 제4조(구성) ①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제4조(구성) <삭 제> 각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하되, 「지방 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 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포함 16명 이상 20명 이하 2. 경제자유구역청 및 상수도사업본 부 인사위원회: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9명 이하 ② 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청과 상수도사업본부 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 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여성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명직위원: 3명 이상의 소속 공무원 2. 위촉위원: 법 제7조제5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 는 4명 이상. 이 경우 1명은 시의 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응시수수료) ①•②(생 럑)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 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 시자격) ① ~ ④ (생 략)

⑤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수 있는 사람은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제17조제1항제8호후단중 "6급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경우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시험등에 응시할수 있는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 ⑨ (생 략)

제11조(응시수수료) ①·②(현행
과 같음)
③
<u>또는</u>
차상위계층이거나
제20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
시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5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
<u> 어야 한다</u> .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43조(결원보충) ① 시 소속 공 제43조(결원보충) ① ------무원의 결원충원은 자체승진, 전보, 군・구 소속 공무원의 전 입.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전입 또는 신규임용 등의 방법 에 따라 충워한다.

② (생략)

제44조(인사교류) 임용권자는 승 제44조(인사교류) 임용권자는 승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군 군·구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의 전입, 군·구 소속 공무원의 전입,-----

② (현행과 같음)

진요인이나 사무형편 등으로 진요인이나 사무형편 등으로 소속 공무원의 군・구로의 전 소속 공무원의 시의회 또는 군 출, 군・구 소속 공무원의 시로 ・구로의 전출, 시의회 또는 군 의 전입, 군·구간 인사교류를 ·구 소속 공무원의 시로의 전 입, 시의회 또는 군・구간 인사 •구의 결원, 인사운영 사정 등 교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을 고려하고 사전에 전·출입 시의회 또는 해당 군·구의 결 인력규모를 협의하여 실시하되, 원, 인사운영 사정 등을 고려하 고 사전에 전・출입 인력규모 를 협의하여 실시하되, 시의회 또는 군・구간의 균형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검토]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 제30조의2(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4조(시행규칙) ○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공무원 임용시험령」 ○ 제35조(응시수수료)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1항 생략)

-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10. 8.〉
-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 3. 21.〉

(이하 생략)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도의회의 사무처장,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시·군·구의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0, 8.〉

(이하 생략)

제29조의3(전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8.〉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

- ②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다른 기관 간, 해당 시·도와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관할 구역의 시·군·구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 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1. 10. 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

[전문개정 2008. 12. 31.]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2021. 11.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제1항, 제2항 생략)

-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5.〉
- 1.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
- 2. 삭제 <2021. 11. 30.>
- 3.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 [전문개정 2012. 9. 21.]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8. 22., 2012. 9. 2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0., 2019. 11. 5., 2020. 7. 28., 2021. 1. 5., 2021. 11. 30.〉

(제1호~제7호 생략)

8.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 계급은 6급 이하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2. 11. 27., 2013. 12. 4.〉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 · 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 · 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제2항 생략)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4.,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2021. 11. 30.〉

(이하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 발생 요인
 - 발생요인 : 규칙 개정으로 수수료 면제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세입예산 일부 감소 예상
-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 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세입예산의 감소분이 총 증지판매액(70,000천원)의 약 5%이하로 예측되므로「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 ※ 2020.12월 기준, 인천광역시 차상위계층 수급자 수 7,019명
 - ※ 2021년도 면제금액
 - 면제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보가족지원대상자
 - 면제금액: 144.5만원
 - 면제비율: 약 2.3%
- 4. 작성자

행정국 인사과장 정명자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24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권이 부여되어 시와 시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사교류 범위 및 인사교류협의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사교류 적용범위에 시의회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 나. 시장 소속으로 두는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에 시의회의 인사위원회 위 원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 다. 인사교류 절차 등에 시의회 포함해서 정비(안 제10조~제15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 광역시장(참조: 인사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4층 인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032-440-2513, FAX: 032-440-86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30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천광역시의 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및 군·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구"를 "시의회 및 군·구"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를 각각 "시 및 시의회,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군·구"를 "시의회 및 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의5에 따라 시와 시의회,"로 한다.

제11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군·구간"을 "인천광역시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군수·구청장은 시와 시의회, 시와 군·구 및 군·구 상호간"으로 한다.

제13조 중 "군수・구청장"을 "의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인사교류 결과보고)"를 "(인사교류 결과통보)"로 하고, 같

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수·구청장"을 "의장·군수·구청장"으로, "보고"를 "통보"로 한다.

제15조 중 "군수・구청장은 당해"를 "의장・군수・구청장은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	제1조 (목적)
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30조의2의 규정에</u>	<u>제30조의2에 따른</u>
<u>의한</u>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
다) 및 군수·구청장 소속의	다),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	<u>"시의회"라 한다) 및 군·구</u>
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u>법 제30조의2제</u>	및 구성) ① <u>법 제30조의2제</u>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	<u> 2항에 따라</u>
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 <u>소속하에</u> 인사교류협의	<u>소속으로</u>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	③
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	
장이 되며, 위원은 군・구의	<u>시</u> 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u>시</u> 및 군·구와 군·구 상 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 2. <u>시</u> 및 군·구와 군·구 상 호간 인사교류계획
- 3. <u>기타</u>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생략)

-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 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군·구 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시 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 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 (인사교류계획의 수립)

<u> </u>
제4조(기능)
·
1. <u>시 및 시의회, 시</u>
2. 시 및 시의회, 시
3. <u>그 밖에</u>
제6조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의
<u>회 및 군·구</u>
③ 제10조에 따른
<u> 세10도에 떠든</u>
<u>.</u>
제10조 (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 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 구 및 군・구 상호간 인사교 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 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 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인사교류수요조사) 시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 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 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사교류요청절차) 군 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군・구간 인사교류가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인사교류계획의 확정 • 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 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군수・구청장에게 통 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제14조 (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

	제27조의5
	<u>세21</u> 도 데 의 회,
제11조 ((인사교류수요조사)
	제10조에 따른
제12조 (인시	ㅏ교류요청절차) <u>인</u>
<u>천광역시의</u>	회의장(이하 "의
<u>장</u> "이라 한	다) • 군수 • 구청장
은 시와 시	의회, 시와 군・구
및 군・구	<u> 상호간</u>
제13조 (인/	사교류계획의 확정
・통보)	
의	
	<u>장·군수·구청장</u>

류를 실시한 <u>군수·구청장</u>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u>보고</u>하 여야 한다.

제15조 (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u>군수·구청장은 당해</u>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u>의장・군수・구정장</u>
통보
.
제15조 (교류공무원에 대한 인
사관리)
의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인사교류) 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다른 기관 간, 해당 시·도와 관할 구역의 시·군·구간, 관할 구역의 시·군·구간,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간, 관할 구역의 시·군·구간, 해당 시·도 또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와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27조의5(인사교류)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이나 6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 발전을 위하여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 3.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과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의회의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 1.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 2.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 ③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의회의 의장은 제2

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 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 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